

#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2016. 12.

박명호 · 전병목



## 서 언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방식의 특별공제제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특별공제제도는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 표준공제이다. 특히 기부금 공제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소득층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기부금 공제방식의 전환에 대하여 송헌재(2013)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소득층의 기부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반면, 기부행위 자체는 세제상 혜택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방식의 전환이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은 사후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부금 관련 공제방식의 전환이라는 외생적인 제도 변화가 개인이나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기부 의향 및 행태에 관한 횡단면 설문조사 자료이다. 두 번째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08년 이후 매년 조사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이다. 세 번째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연말정산 신고자료에서 추출된 근로소득자 표본패널 자료이다. 각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횡단면 설문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을 인식하고 있는 자는 10명 중 4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도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자 중 86%는 이런 제도 변화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 중 절대다수인 94.3%는 기부행위를 할 때 있어서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설문조사 분석의 한계는 인과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상관분석이라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자료 및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표본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개인이나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바, 세금혜택이 줄어든 고소득 계층의 기부율(기부금/소득)은 세금혜택 변동이 없는 중소득 계층의 기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금혜택이 늘어난 저소득 계층의 기부율은 사용하는 자료의 유형에 따라 중소득 계층의 기부율보다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가 한결같이 보여주는 사실은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전환이 고소득층의 기부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연말정산 자료에서 추출한 근로소득자 표본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기부금 공제 신청액의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부금 공제 신청 자료가 중도절단 자료(censored data)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한바, 전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에 비해 큰 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은 추정방법에 따라 1.19 ~ 2.45 수준을 보였으며 그 크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탄력성은 -0.12 ~ -0.63으로 상당히 작은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의 가용 자료를 이용해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외생적인 변화가 개인이나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바, 고소득 계층에는 단기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결과는 최근 기부액의 하락을 근거로 소득공제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현재까지 가용한 자료를 사용할 때 그 근거가 없음을 의미한다. 가용한 자료의 한계상 본 보고서에서는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 전환이 갖는 중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효과는 단기 효과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 효과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박명호 선임연구위원과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우선 기부금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해 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손원의 원장과 분석방법론에 대해 세밀하게 자문해 준 중앙대학교 강창희 교수,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 이화여대 송호신 교수,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께 감사드린다. 기부금 관련 세법규정의 검토를 도와준 서울시립대 양인준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중간보고 및 최종 보고 세미나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 및 원내 동료 박사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최종단계에서 유익한 조언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도 함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 단계별로 저자들을 도와준 정보를 연구원과 이현정 연구원 및 재정패널자료의 사용에 많은 도움을 준 오지연 연구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자료를 제공해준 국세청 관계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정부는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방식을 2014년부터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이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로 설정되었다.<sup>1)</sup> 이로 인하여 한계세율이 15%를 초과하는 상위 소득계층은 과거에 비해 세제상 혜택이 줄어들어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세법개정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자발적인 기부행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sup>2)</sup> 예를 들면, 송헌재(2013)는 우리나라 가구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7.5~9.9 수준으로 추정하였고, 이 추정결과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에 대한 세법개정의 기부금 축소효과가 상당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반면, 기부행위 자체는 세제상 혜택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하였다.<sup>3)</sup> 따라서 과거 제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의 기부 관련 통계 및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금 공제방식의 전환이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사후적으로 직접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문헌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기부금 공제제도

---

1) 2014~2015년의 경우 적격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였고, 2016년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2) 매일경제(2015.6.18)에서는 직장인 기부금이 2013년 대비 5천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도하며 세액공제를 확대를 주장하였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84627>, 접속일자: 2016. 7. 8.).

3) 『동아일보』, 「세법개정에도 기부금 늘어... 정부 “세액 공제율 인상 신중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51110/74699564/1>, 2015. 11. 10(접속일자: 2016. 7. 8.).

전환이 우리나라 가구 및 개인들의 기부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세 가지 미시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으로 검증한다. 첫 번째 분석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기부 의향 및 행태에 관한 횡단면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다. 동 횡단면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을 인식하고 있는 자는 4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제도 변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60% 사람들의 기부행위는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도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자 중 86%는 이런 제도 변화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고, 기부를 줄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9%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 중 94.3%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설문조사 분석의 한계는 인과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상관분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 변화의 인과효과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와 국제청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인과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분석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08년 이후 매년 조사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개인이나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때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통한 이중차분 분석은 가용 정보의 출처 및 정보 수집 단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재정패널 조사대상 가구를 통해 수집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보를 이용한 개인 단위의 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재정패널 설문조사 응답 정보를 활용한 가구 단위의 분석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부금 공제제도와 현행 기부금 공제제도에 관한 세법상의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근로소득만 있는 임금근로자는 소득계층별로 서로 다른 세제상 혜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sup> 즉,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은 세제상 혜택이 줄었고,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임

---

4)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여전히 필요경비 산입이 허용됨에 따라 세제상 혜택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근로자 계층은 세제상 혜택이 늘었지만, 그 사이의 중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은 세제상 혜택의 변화가 없었다. 이런 외생적인 제도 변화의 차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처치집단(treatment group)으로 저소득 임금근로자 계층과 고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을 설정하였고 중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을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설정한 후 이중차분법을 통해 평균 처치효과(ATE)를 추정하였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로 정의된 기부율을 사용하였다.<sup>5)</sup>

재정패널조사에서 확보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보를 이용한 개인 단위의 이중차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계층에 대한 정책 변화의 평균 처치효과는 10% 유의수준 아래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율의 감소를 야기하는 인과효과가 없음을 시사한다. 반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정책 변화의 평균 처치효과는 일부 모형에서 10% 유의수준 아래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기부율의 증가를 야기하는 인과효과를 낼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재정패널조사 자료 자체를 사용하여 가구 단위의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정책 변화의 평균 처치효과는 10% 유의수준 아래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구 단위의 분석에서는 고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 계층에 있어서도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율의 감소를 야기하는 인과효과가 없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분석은 국세청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들의 납세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기부금공제 신청액의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을 추정한 분석이다. 이런 세무신고 자료는 금번 분석을 위해 처음으로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되었다. 기부금공제 신청 자료가 갖는 특성, 즉 중도절단 자료(censored data)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에

---

5)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득과 기부금 증가의 상대적 크기가 중요하다고 보아 기부금 대신 기부율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소득이 제도 변화 전 3천만원에서 3천 300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기부금은 10만원에서 10만 1원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였을 때, 기부금 규모는 비록 증가하였지만 기부행위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비해 큰 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은 추정방법에 따라 1.19~2.45 수준을 보였으며 그 크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탄력성은 -0.12~-0.63으로 상당히 작은 크기를 보여준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중하위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2.40~-2.47)를 보여주고 고소득구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다. 종교단체 등이 포함된 지정기부금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중하위소득자들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개인이나 가구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는 인과효과는 대체로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횡단면 설문조사나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한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소득수준 등의 경제적 형편과 심리적 동기가 오히려 주된 결정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개인들의 기부 의향을 조사한 횡단면 설문조사 중 기부금의 증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부금이 증가한 사람들의 경우 그 요인으로 심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9%이다. 또한 지난 3년간 기부금이 감소한 사람들의 경우 그 요인으로 경제적 형편의 악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7.5%나 된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 논의 시 제기되었던 우려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부금 관련 세법개정이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기부금 관련 세법 규정을 살펴본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소득수준별로 기부금 관련 세제상 혜택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기부금 공제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조치는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서 세부담의 변화를 야기한 반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변화를 야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4년의 기부금 관련 세법개정으로 동일한 소득을 획득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에

기부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제상 혜택의 차별이 조세의 형평성 관점에서 타당하지에 대한 논란이 향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동일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에 기부금 관련 세제혜택을 과거처럼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기부금 관련 세법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가 달라 법해석상 혼동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소득금액’을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각기 해석해 보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계산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산입한도를 정한다고 이해할 소지가 있다.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필요경비 계산 시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여타 기부금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정하고 산입한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 간에 상이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서 납세자에게 법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상이한 해석을 낳는 「소득세법」 규정과 동 시행령 규정 간에 혼동을 없애는 용어 정의의 통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상의 통계작성 방식을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에 맞추어 기부금 관련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5년도 『국세통계연보』상 종합소득세의 기부금 신고현황 통계표에서 ‘금액 합계’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인 기부금액, 필요경비에 산입된 기부금액, 기부금특별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으로 되어 있다. 앞의 두 가지 항목은 기부금액인 반면 마지막 항목은 기부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세액공제액으로 서로 합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부금특별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득세 신고서상 기부금액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기부금 신고현황 통계표상 인원 합계는 중복집계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동일인이 새롭게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신청하고, 필요경비

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며,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특별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부금 신고인원의 단순 합계뿐만 아니라 순계 단위로 인원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목 차

I. 서론 .....	19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9
2. 기존 연구 .....	20
II. 기부금 공제제도 현황 .....	25
1. 우리나라의 기부금 공제제도 .....	25
가. 현행 세법상 기부금의 의미 및 유형 .....	25
나. 세법상 기부금 공제제도 .....	27
다. 기부금 관련 세법개정으로 인한 변화 .....	30
라. 기부금 공제 관련 집계통계 분석 .....	33
III.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	48
1. 횡단면 설문조사 자료를 통한 분석 .....	48
가. 조사설계 및 표본구성 .....	48
나. 기술통계량 .....	50
다. 기부금 공제제도 변화 인지 여부 및 기부행위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	64
라. 소결 .....	67
2. 재정패널 자료를 통한 분석 .....	67
가. 분석자료 개요 .....	68
나. 분석 전략 .....	70
다. 분석 결과 .....	73
라. 소결 .....	80
3.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한 분석 .....	81
가. 배경 .....	81

---

나. 추정모형 .....	82
다. 분석자료 .....	86
라. 분석결과 .....	92
마. 소결 .....	108
IV. 결론 및 정책시사점 .....	110
참고문헌 .....	115
〈부 록〉 .....	117
1.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범위 .....	117
가. 법정기부금의 범위 .....	117
나. 지정기부금의 범위 .....	120
2.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 추가 분석 .....	126
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개인들에 대한 추가 분석 .....	126
나. 재정패널조사 가구에 대한 추가 분석 .....	127
3. Tobit 모형 추가 분석 .....	129
가. 종속변수: 총기부금액 .....	129
나. 종속변수: 지정기부금액 .....	134

---

---

## 표목차

〈표 II-1〉 공제대상 기부금의 한도(2013년 「소득세법」 기준) .....	28
〈표 II-2〉 기부금 세액공제의 계산 .....	29
〈표 II-3〉 공제대상 기부금의 한도 .....	30
〈표 II-4〉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에 따른 납세자 유형별 기부금 과세처리 방식 ....	31
〈표 II-5〉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한계세율 .....	32
〈표 II-6〉 기부금 관련 세법개정의 효과 .....	33
〈표 II-7〉 종합소득세 기부금 신고현황 .....	35
〈표 II-8〉 근로소득세 기부금 신고현황: 총급여 구간별 .....	37
〈표 II-9〉 근로소득세 기부금 신고현황: 과세표준 규모별 .....	39
〈표 II-10〉 기부금 세제개편 전후(2013 대비 2014년)의 지표별 변화 방향 .....	47
〈표 III-1〉 표본구성 요약 .....	49
〈표 III-2〉 인구통계학적 특징 .....	50
〈표 III-3〉 연평균 소득 수준 .....	52
〈표 III-4〉 지난 3년간 기부 경험 여부 .....	54
〈표 III-5〉 2015년 한 해 동안의 기부 횟수 .....	55
〈표 III-6〉 지난 3년간 기부 규모 변화 .....	56
〈표 III-7〉 기부 감소의 중요한 요인 .....	58
〈표 III-8〉 기부 증가의 중요한 요인 .....	61
〈표 III-9〉 기부금에 대한 제도 변화의 인지 여부 및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	64
〈표 III-10〉 기부금 공제제도 변화 인지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	65
〈표 III-1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기부행태 변화 여부 실증분석 결과 .....	66
〈표 III-12〉 재정패널조사 차수별 가구, 가구원 현황 .....	69
〈표 III-1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개인 단위 분석 관련 기초통계 .....	74

---

〈표 III-14〉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76
〈표 III-15〉 재정패널조사 가구 단위 분석 관련 기초통계	77
〈표 III-16〉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79
〈표 III-17〉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의 변화	82
〈표 III-18〉 기초통계량	86
〈표 III-19〉 기부금 관련 변수의 연도별 추이	87
〈표 III-20〉 소득구간별 기부자 비율 추이	88
〈표 III-21〉 소득구간별 평균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추이	88
〈표 III-22〉 소득구간별 평균 법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추이	88
〈표 III-23〉 소득구간별 평균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추이	88
〈표 III-24〉 연도별 종합소득세율	89
〈표 III-25〉 주요 변수 설명	92
〈표 III-26〉 기부 여부에 대한 Random effects probit regression 결과	94
〈표 III-27〉 Fixed-effects(within) regression	97
〈표 III-28〉 Random Tobit Regression(전체 sample)	99
〈표 III-29〉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5,500만원 이하)	100
〈표 III-30〉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7천만원 이하)	101
〈표 III-31〉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이하)	102
〈표 III-32〉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초과)	103
〈표 III-33〉 Random Tobit Regression(전체 sample)	104
〈표 III-34〉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5,500만원 이하)	105
〈표 III-35〉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7천만원 이하)	106
〈표 III-36〉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이하)	107
〈표 III-37〉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초과)	108

---

## 그림목차

[그림 II-1] 종합소득세 기부자 신고인원 비율 추이 .....	33
[그림 II-2] 종합소득금액 1천원당 기부금액 추이 .....	34
[그림 II-3] 근로소득세 기부자 신고인원 비율 추이 .....	36
[그림 II-4] 근로소득금액 1천원당 기부금 추이 .....	37
[그림 II-5] 기부금 규모 및 공제신청자 추이 .....	40
[그림 II-6] 기부금 공제 신청자 비중 및 평균 기부액 추이 .....	41
[그림 II-7] 기부금 공제 신청자의 평균 기부액과 기부율 추이 .....	41
[그림 II-8] 과표구간별 소득자의 기부금액 변화 추이 .....	42
[그림 II-9] 과표구간별 기부금 공제 신청자 추이 .....	43
[그림 II-10] 과표구간별 소득자 대비 기부금 공제 신청자 비중 .....	44
[그림 II-11] 기부금 공제 신청자의 과표구간별 평균 기부금액 .....	45
[그림 II-12] 기부금 공제 신청자의 과표구간별 기부율 추이 .....	46
[그림 III-1] 지난 3년간 기부 경험 여부 및 연간 기부 횟수 .....	53
[그림 III-2] 지난 3년간 기부 규모 변화 .....	56
[그림 III-3] 기부 감소의 중요한 요인 .....	57
[그림 III-4] 기부 증가의 중요한 요인 .....	60
[그림 III-5] 기부금에 대한 제도 변화의 인지 여부 및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	63
[그림 III-6] 소득구간별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및 기부가격 추이 .....	90
[그림 III-7] 연도별 기부가격 및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분포 추이 .....	91

---

## 부록 표목차

〈부표 1〉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반복적 횡단면 자료 분석 .....	126
〈부표 2〉 소득위치가 가변인 균형 패널 자료 분석: 반복적 횡단면 자료 분석 .....	127
〈부표 3〉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가구의 분야별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근로소득 대비 분야별 기부금 분석 .....	127
〈부표 4〉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가구의 분야별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총소득 대비 분야별 기부금 분석 .....	128
〈부표 5〉 Random Tobit Regression(전체 sample) .....	129
〈부표 6〉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30
〈부표 7〉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31
〈부표 8〉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이하) .....	132
〈부표 9〉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초과) .....	133
〈부표 10〉 Random Tobit Regression(전체 sample) .....	134
〈부표 11〉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35
〈부표 12〉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36
〈부표 13〉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이하) .....	137
〈부표 14〉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초과) .....	138

---

---

# I. 서 론<sup>6)</sup>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오로지 정부의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각양각색의 수요를 정부가 모두 제때에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정책적인 유인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소득세 측면에서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의 자발적인 기부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부여 방식을 전환하였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이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로 설정되었다.<sup>7)</sup> 이로 인하여 한계세율이 15%를 초과하는 소득 계층은 과거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세법개정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자발적인 기부행위를 위축시켜서 기부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sup>8)</sup> 예를 들면, 송헌재(2013)는 우리나라 가구의

---

6) 본 보고서의 일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6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과 『재정포럼』 2016년 12월호에 일부 수록되어 있음

7) 2014~2015년에는 적격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였고, 2016년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8) 『매일경제』(‘15.6.18)에서는 직장인 기부금이 2013년 대비 5천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도하며 세액공제율 확대를 주장하였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84627>(접속일: 2016. 7. 8.)).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7.5~9.9 수준으로 추정하였고, 이 추정결과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에 대한 세법개정의 기부금 축소효과가 상당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과거의 제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의 기부 관련 통계 및 정보를 활용하여 이러한 우려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만일 실증분석의 결과가 이러한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준다면 제도 보완 요구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정말로 우리나라 가구 및 개인들의 기부행위를 위축시켰는지를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상 기부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되는 기부금 관련 통계들도 검토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검증과 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정책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과 더불어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술한다. 제Ⅱ장에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살펴본다. 과거 규정과 현행 규정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제Ⅱ장에서는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기부금 관련 집계자료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다양한 개인 단위 및 가구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의 효과를 식별·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앞 장들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제시한다.

## 2. 기존 연구

기부행위에 대한 소득세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정책의 관심 대상이었으며 이에 따라 동 주제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먼저 외국의 기부 관련 연구는 초기의 단순한 가격효과, 소득효과를 분석하는 데서 발전하여 기부행위의 시점 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소득 및 가격에서 항상적인 요인과 일시적 요인의 영향구분 등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주로 개인 납세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늦게 추진되었는데 현재까지 가격효과, 소득효과 등에 대한 연구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연구방법론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만 연구를 가능케 하는 자료의 한계가 더 큰 제약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제가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송헌재(2013), 박기백(2010) 등이 대표적이다. 박기백(2010)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분석을 통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기부금액이 다수의 경우 0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고려한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기부금액의 가격탄력성은 -0.564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으며 소득탄력성은 0.720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가격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송헌재(2013)는 동일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2008~2012년 자료(매년 약 5천가구 조사)를 패널로 분석하여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도출하였다. 분석자료는 조사자료 중 개인의 국세청 연말정산영수증을 제출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총 2,122명의 근로자가 5년간 제출한 5,985개가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추정은 2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연말정산영수증 제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표본선택(sample selec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통해 분포확률 변수(Mill's ratio)를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임의효과 토빗 모형(Random Effect Tobit model)을 통해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7.5 ~ -9.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탄력성도 1.4~1.8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횡단면분석은 장기탄력성에 가까운 추정치를 보여주고 패널자료는 보다 짧은 기간의 탄력성을 보여준다고 할 때, 단기탄력성이 장기탄력성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국에 대해 많이 이루어졌다. Feldstein and Taylor(1976)는 미국 재무성 1962, 1970년 세무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횡단면

분석과 두 기간 소득구간별 변화율 분석을 함께 시행하여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부금이 0원인 샘플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토빗 모형(Tobit model)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1.0 \sim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Clotfelter(1980)는 미국의 세무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의 경계에 있는 납세자가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의 장단기 가격탄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의 경계에 있는 납세자, 즉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을 간헐적으로 하는 납세자는 전체 기부금 가격탄력성의 크기를 줄이는 영향을 미쳤다. 즉 상시적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가격 반응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기부금의 가격탄력성 구조가 장기탄력성이 단기탄력성보다 더 큰 형태임을 보여주고 있다.<sup>9)</sup> 구체적인 가격탄력성 수준은 -1 내외로 나타났다.

Choe & Jeong(1993)은 미국 국세청이 생성한 1985 개인소득세 모델 파일(1985 Individual Tax Model File)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제도가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공제제도는 고소득자의 기부행위에 상대적으로 높은 유인효과를 지녔다는 데 일반적인 합의가 있는 반면, 중간 소득자 및 저소득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유인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고 동 연구는 중간 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기부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동 연구는 기부금이 0인 다수의 응답자가 존재(non-negativity constraint)하는 중도절단 편의(censoring bias) 문제와 누진세체계에서 기부가격을 결정짓는 한계소득세율(marginal tax rates)이 기부금 규모에 의존하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simultaneous equations tobit(SET)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은 2.53, 항목별 공제를 신청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은 2.45로 추

9)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박기백(2010), 송헌재(2013)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경향이다.

정하여 기부행위가 기부금 공제제도에 따른 기부 가격 변화에 탄력적이라고 주장한다.

Randolph(1995)는 미국의 세무신고자료 패널(1979~1988)을 이용하여 납세자들이 가격 등을 감안하여 기부시기를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자신의 일시적인 소득 및 가격변동을 반영하여 기부금액을 조절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소득탄력성은 과소추정, 가격탄력성은 과대추정하게 됨을 보였다. 기부금은 영구적인 소득 변화에 대해 이전 연구보다 더 탄력적인 반면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덜 탄력적이다.

Auten, Sieg and Clotfelter(2002)는 미국의 소득세 세무신고 패널자료(1979~1993)를 이용하여 가격 및 소득 변화를 항구적(Permanent) 요인과 일시적(Transitory)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항구적 가격 변화에 대한 기부금 탄력성은  $-0.79 \sim -1.26$ 이며 일시적 가격 변화에 대한 기부 탄력성은  $-0.40 \sim -0.52$ 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탄력성은 역시 항구적 변화에 대해서는  $0.40 \sim 0.87$  수준으로 일시적 소득 변화에 대한 탄력성  $0.29 \sim 0.49$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Bakija and Heim(2011)은 미국의 소득세 신고 패널자료(1979~2006)를 이용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조세 변화에 대한 점진적 조정(즉 주별 조세인센티브 변화과정의 차이)을 허용하면서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주(state)별 기부가격 차이를 기반으로 추정한 항구적 가격 변화에 대한 기부금 탄력성은  $-1$  보다 큰 값(절댓값)을 보이며 연방세의 변화를 기반으로 추정한 수치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절댓값)의 탄력성을 보였다. 연방세와 주별 변화를 함께 고려할 경우 가격탄력성은  $-0.6 \sim -1.1$  내외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이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당히 유사한 추정방법론을 이용하고 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존재하는 개인소득세제 차이, 추정에 이용된 자료(서베이자료 vs. 세무신고자료) 차이 등이 원인일 수 있다. 구체적인 세제 차이를 보면 미국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는 항목별 공제가 일괄공제액보다 커야 선택할 수 있다. 즉 항목별 공제가 있는 기부금액을 활용하는 추정치는 일괄공제를 신청하는 저소득층의 기부 행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괄공제인 표준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높지 않다. 두 국가 사이의 추정치 차이의 다른 요인은 기부금에 대한 문화 차이 등도 있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부가 익숙한 문화에서는 소득 또는 가격탄력성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 II. 기부금 공제제도 현황

---

### 1. 우리나라의 기부금 공제제도

#### 가. 현행 세법상 기부금의 의미 및 유형

통상 기부금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는 돈”이다.<sup>10)</sup> 세법에서도 이런 사회통념상의 기부금 정의를 준용하여 기부금을 정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법상 기부금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 정의된다. 또한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30%)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세제혜택의 유무 및 세제혜택의 한도 유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기부금을 구분한다. 여기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란 필요경비산입 허용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부금인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기부금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있다.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불린다.

법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의미한다(〈부록〉 참고). 사업소득만 있는 자

---

10)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5693300>(접속일: 2016. 8. 25).

의 법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제한 금액이며,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둘째, 필요경비에 불산입된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액은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각 과세기간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때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이 동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하며, 특정 조건이나 일정한 한도액 이내의 금액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기술되어 있다(부록 참고).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종교단체 기부금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산정된다. 첫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sup>11)</sup>×100분의 10과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 등 합계액)×100분의 30의 금액이다. 지정기부금 중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2009년 이전분은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소득세법」 제 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에

11) 기부금 등 합계액은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의미한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필요경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그 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외<sup>12)</sup> + 이월결손금)×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액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비지정기부금은 세법상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이다. 동창회·동문회·향우회·종친회 기부금이나 학생에게 개인 자격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전액 필요경비산입 및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나. 세법상 기부금 공제제도

### 1) 2014년 세법개정 이전 공제제도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4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며,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가 소득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은 거주자

---

12) '법정기부금 외'란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초과분)의 필요경비 인정액을 말한다.

인 본인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그의 기본공제대상자(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포함하였다. 소득공제대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중에서 사업소득필요경비산입액을 제한 금액이며, 공제 한도액은 필요경비 산입후 종합소득금액에서 14% 세율 적용분 금융소득을 제한 금액이다. 공제대상 기부금 유형별 공제범위 한도액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공제대상 기부금의 한도(2013년 「소득세법」 기준)

기부금	한도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 <sup>13)</sup>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 30/100
지정기부금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 10/100 + MIN[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등] × 20/100,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 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 30/100

자료: 2013년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 2) 2014년 세법개정 이후 공제제도

정부는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3년 세법 개정안에서 의료비, 교육비와 함께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고,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되었다.

새로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공제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

13)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해당되며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한다.

비 손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과 동일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다. 다음,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종합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자 포함)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의거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sup>14)</sup>이 있는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sup>15)</sup>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표 II-2〉 기부금 세액공제의 계산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초과인 경우	300만원 + (기부금 - 2,000만원) × 30%

자료: 2016년도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① 세액공제 대상금액 × 15%(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30%<sup>16)</sup>)와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기부금별 공제대상 한도는 〈표 II-3〉과 같다.

14)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

15)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은 제외한다.

16) 2015년까지는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액 중 3천만원 초과분 25%를 적용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 초과분에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표 II-3〉 공제대상 기부금의 한도

기부금	한도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 <sup>17)</sup>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해당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30/100
지정기부금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10/100 + MIN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등)×20/100,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 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30/100

자료: 2016년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 다. 기부금 관련 세법개정으로 인한 변화

과거의 「소득세법」과 현행 「소득세법」 모두 기부문화 활성화를 기치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익적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방식이나 기부금 공제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방식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과거 제도나 현 제도에서 변함이 없다. 반면 기부금에 대한 공제제도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즉, 구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 방식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 「소득세법」에서 기부금 공제 방식은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부금 관련 세제혜택의 과세처리 방식은 소득 유형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먼저,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구 「소득세법」 아래서는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방식이나 기부금 공제 방식 모두 적용받을 수 있었다. 즉,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방식과 소득공제 방식

17)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해당되며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제혜택을 받았다.<sup>18)</sup> 그러나 현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방식과 기부금 소득공제 방식은 동일한 과세표준금액을 갖는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세부담은 구 「소득세법」이나 현 「소득세법」 규정이 동일하다. 다음, 근로소득만 있는 자처럼 사업소득이 없는 자는 구 「소득세법」이나 현 「소득세법」 모두 공제제도만을 적용받는다. 다만, 과거에는 소득공제 방식이었지만 현재에는 세액공제 방식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마지막 소득 유형은 사업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동시에 있는 자이다. 이들은 구 「소득세법」이나 현 「소득세법」 모두 필요경비 산입 방식이나 공제 방식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에는 소득공제 방식이었지만 현재에는 세액공제 방식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과세처리 방식을 소득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II-4>와 같다.

<표 II-4>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에 따른 납세자 유형별 기부금 과세처리 방식

구분	과거	현행
(a) 사업소득만 있는 자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	필요경비 산입
(b)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예: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이 함께 있는 자		필요경비 산입 + 세액공제
(c) 사업소득은 없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예: 근로소득자 혹은 이자소득자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신·구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은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소득 유형에 따른 납세자 유형별로 세부담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야기했는지 살펴본다. 먼저, 구 「소득세법」상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방식과 기부금 소득공제 방식은 동일한 과세표준금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납부세액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8) 예를 들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납세증명서상 소득금액이 큰 기부금 소득공제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이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세법개정이 세부담 측면에서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음을 나타낸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처럼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효과가 아래의 <표 II-5>와 같은 한계세율의 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의 공제율이 15%이기에 과세표준금액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15%를 초과하는 납세자 계층<sup>19)</sup>은 과거의 소득공제 방식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였다. 한계세율이 15% 미만인 계층<sup>20)</sup>은 현재의 세액공제 방식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에 있는 계층은 세부담 측면에서 변화가 없다.

<표 II-5>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한계세율

(단위: %)

과세표준 구간	한계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8

자료: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규정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기부금 관련 세법개정으로 인한 효과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에 구분하면 아래의 <표 II-6>와 같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세부담 측면에서 세법개정의 효과가 없다. 이에 반하여 근로소득자는 소득 계층별로 세부담 효과가 상이하며 고소득 계층이 불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세법개정이 종사상 지위별로 세제상 차별을 낳았음을 시사한다.

19)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계층

20)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계층

〈표 II-6〉 기부금 관련 세법개정의 효과

구분	과거	현행	납부세액 변화
지역업자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	필요경비 산입	불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고소득 계층: 증가 중소득 계층: 불변 저소득 계층: 감소

자료: 신·구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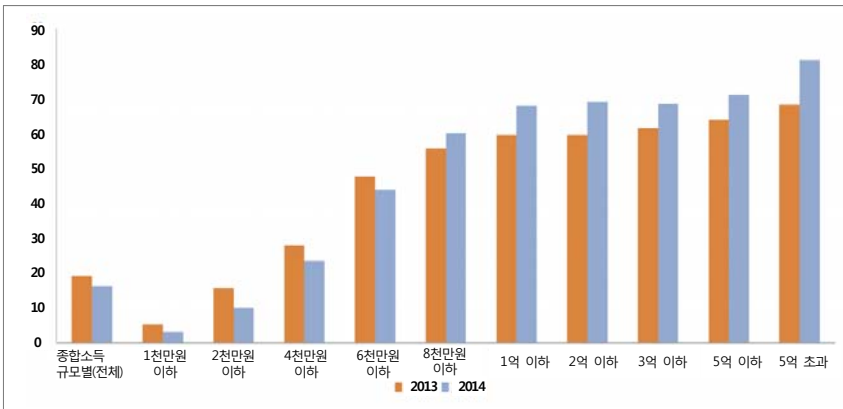
## 라. 기부금 공제 관련 집계통계 분석

### 1) 종합소득세 통계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대비 기부금 신고인원 비율을 보면 2014년도는 16.3%로 2013년도 19.3%에 비해 약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 비율의 감소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반면, 6천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부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다만, 기부금 신고인원을 기부금 소득공제 인원, 필요경비 손금산입 인원, 세액공제 인원을 단순 합산한 것이어서 중복 인원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II-1] 종합소득세 기부자 신고인원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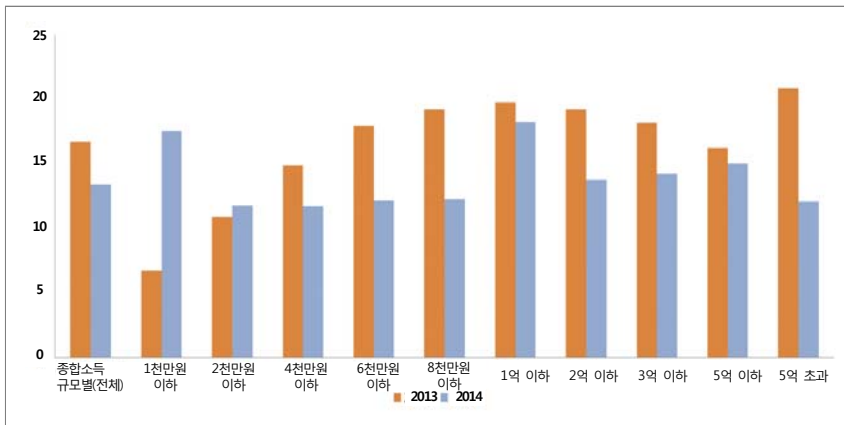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4.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3-2-7.기부금 신고 현황, 20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4.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3-2-7.기부금 신고 현황,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종합소득금액 1천원당 기부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표면상 2014년도 종합소득금액 1천원당 기부금액은 2013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부금액의 측정단위가 달라 실질적인 하락 여부는 불분명하다. 2013년도까지의 기부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부금과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기부금 합계액인 반면, 2014년도의 기부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이월된 기부금)과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기부금 합계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때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을 합하여야 연도간 비교의 일관성이 있으나 『국세통계연보』의 한계로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종합소득금액 1천원당 기부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이다.

[그림 II-2] 종합소득금액 1천원당 기부금액 추이

(단위: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4.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3-2-7.기부금 신고 현황, 20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4.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3-2-7.기부금 신고 현황,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표 11-7〉 종합소득세 기부금 신고현황

(단위: 천명, 십억원, %)

구분		전체 신고인원	종합소득 금액	기부금 신고인원	기부금 신고자비율	기부금 신고액	종합소득금액 1천원당 기부금액(원)
2013	종합소득규모별 (전체)	4,565	134,370	879	19.3	2,247	16.7
	1천만원 이하	2,161	10,391	116	5.4	70	6.7
	2천만원 이하	947	13,439	148	15.6	147	10.9
	4천만원 이하	676	18,997	189	28.0	283	14.9
	6천만원 이하	297	14,513	141	47.6	261	18.0
	8천만원 이하	162	11,181	90	55.7	215	19.2
	1억원 이하	97	8,673	58	59.5	172	19.8
	2억원 이하	151	20,452	90	59.4	394	19.2
	3억원 이하	35	8,582	22	61.4	156	18.2
	5억원 이하	22	8,158	14	63.7	133	16.3
5억원 초과	16	19,984	11	68.1	417	20.9	
2014	종합소득규모별 (전체)	5,053	144,783	821	16.3	1,946	13.4
	1천만원 이하	2,458	11,303	77	3.1	199	17.6
	2천만원 이하	1,047	14,991	105	10.0	177	11.8
	4천만원 이하	751	21,049	176	23.4	247	11.7
	6천만원 이하	292	14,309	128	43.8	174	12.2
	8천만원 이하	160	11,073	96	59.9	136	12.3
	1억원 이하	99	8,894	68	68.0	163	18.3
	2억원 이하	163	22,187	112	68.9	306	13.8
	3억원 이하	40	9,576	27	68.4	137	14.3
	5억원 이하	25	9,331	17	71.0	140	15.0
5억원 초과	18	22,070	15	80.9	268	12.1	

주: 1. 기부금 신고인원은 기부금 소득공제, 필요경비 손금산입,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신고인원을 단순합산한 것으로 중복 문제가 있을 수 있음.

2. 기부금 신고액은 2013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부금과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기부금 합계액인 반면 2014년에는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이 아닌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합산되어 일관성 측면에서 비교 곤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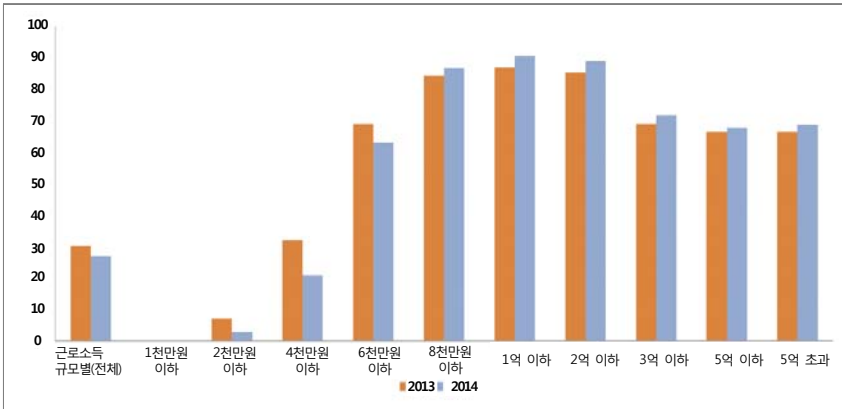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4.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3-2-7.기부금 신고 현황, 20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4.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3-2-7.기부금 신고 현황,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 2) 근로소득세 통계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대비 기부금 신고인원 비율을 보면 2014년도는 27.0%로 2013년도 30.2%에 비해 약 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부자 비율의 감소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구간에 발생한 반면, 6천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부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3] 근로소득세 기부자 신고인원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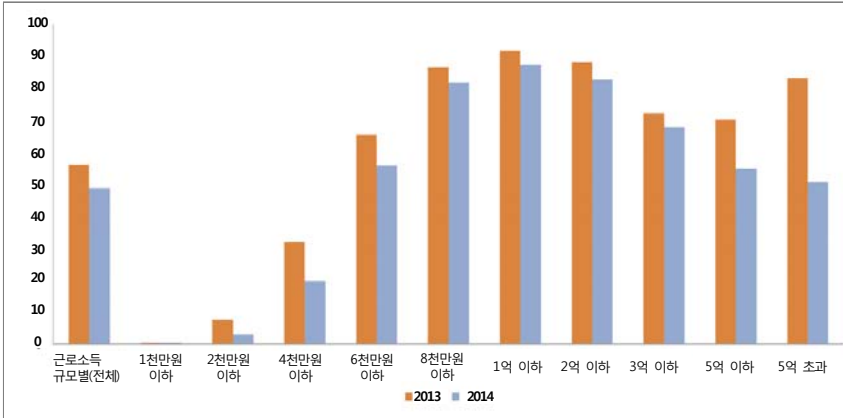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20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근로소득세 신고 현황 중 근로소득금액 1천원당 기부금액 추이를 보면 2014년도는 2013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013년도까지의 기부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부금 금액으로 총 5조 6천억원이다. 2014년도의 기부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이월된 기부금)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까지 합한 금액으로 총 5조 1천억원이다. 연말정산 신고 현황상 총급여는 2013~2014년 동안 증가한 반면 기부금 신고액 자체는 오히려 약 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금액 1천원당 기부금액 비율을 보면, 1천만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총급여 구간에서 기부금액 비율은 2014년도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총급여

여 구간에서 기부금액 비율이 6.5%p나 하락하여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그림 II-4] 근로소득금액 1천원당 기부금 추이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20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표 II-8> 근로소득세 기부금 신고현황: 총급여 구간별

(단위: 천명, 십억원, %)

구분	전체 인원	총급여	기부금 신고인원	기부금 신고자비율	기부금 신고액	총급여 1천원당 기부금액(원)
총급여(전체)	16,295	498,028	4,924	30.2	5,584	11.2
1천만원 이하	3,725	17,985	2	0.1	0	0.0
2천만원 이하	3,983	58,751	283	7.1	91	1.5
4천만원 이하	4,361	125,398	1,397	32.0	799	6.4
6천만원 이하	2,160	105,778	1,491	69.0	1,387	13.1
8천만원 이하	1,125	77,281	949	84.4	1,337	17.3
1억원 이하	469	41,646	407	86.9	763	18.3
2억원 이하	421	52,225	359	85.2	921	17.6
3억원 이하	31	7,373	21	69.1	106	14.4
5억원 이하	13	4,960	9	66.4	70	14.0
5억원 초과	7	6,631	5	66.5	110	16.6

〈표 II-8〉의 계속

구분	전체 인원	총급여	기부금 신고인원	기부금 신고자비율	기부금 신고액	총급여 1천원당 기부금액(원)
총급여(전체)	16,630	528,660	4,487	27.0	5,147	9.7
1천만원 이하	3,435	16,294	4	0.1	1	0.0
2천만원 이하	4,009	60,157	114	2.9	36	0.6
4천만원 이하	4,672	133,995	975	20.9	527	3.9
6천만원 이하	2,290	112,208	1,443	63.0	1,252	11.2
8천만원 이하	1,198	82,408	1,040	86.8	1,347	16.3
1억원 이하	500	44,418	452	90.5	776	17.5
2억원 이하	471	58,417	419	89.0	967	16.6
3억원 이하	33	7,999	24	71.7	109	13.6
5억원 이하	15	5,582	10	67.9	61	11.0
5억원 초과	7	7,183	5	68.9	73	10.1

주: 1. 2014년 기부금 신고인원은 기부금 소득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신고인원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중복 문제가 있을 수 있음.

2. 기부금 신고액은 2013년의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이지만 2014년에는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도 포함. 그러나 2013~2014년 모두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기부금은 불포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20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연말정산 신고 현황 중 과세표준 규모별 기부금액 분포를 보면, 총급여 대비 기부금의 비율인 기부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인 계층과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인 계층에서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하락하였다. 이 중 기부율의 하락폭이 가장 큰 계층은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인 계층으로 0.67%p 감소하였다. 반면 과세표준 6천만~3억원 사이의 계층에서는 기부율이 동일 기간 동안에 증가하였다. 기부금액의 절대적인 규모를 보더라도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인 계층과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인 계층에서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9〉 근로소득세 기부금 신고현황: 과세표준 규모별

(단위: 조원, %, %p)

과세표준 규모별	2014년			2013년			차이	
	총급여 (A)	기부금 (B)	기부율 (C=B/A)	총급여 (D)	기부금 (E)	기부율 (F=E/D)	기부금 (B-E)	기부율 (C-F)
1천만원 이하	102.0	0.13	0.13	117.1	0.74	0.64	-0.61	-0.51
1.2천만원 이하	22.3	0.06	0.29	21.8	0.20	0.92	-0.14	-0.63
3천만원 이하	162.8	1.34	0.82	142.7	1.84	1.29	-0.50	-0.46
4천만원 이하	56.9	0.84	1.48	45.8	0.73	1.60	0.11	-0.12
4.6천만원 이하	27.5	0.44	1.61	21.1	0.35	1.66	0.09	-0.05
6천만원 이하	46.3	0.78	1.68	35.0	0.59	1.69	0.19	-0.01
7천만원 이하	22.4	0.39	1.73	16.3	0.26	1.62	0.12	0.10
8천만원 이하	16.8	0.29	1.70	11.3	0.17	1.51	0.12	0.19
8.8천만원 이하	10.3	0.17	1.65	6.2	0.09	1.46	0.08	0.19
1억원 이하	10.9	0.17	1.59	6.3	0.09	1.38	0.09	0.20
2억원 이하	23.3	0.34	1.46	16.4	0.23	1.40	0.11	0.05
3억원 이하	6.1	0.08	1.25	5.0	0.06	1.23	0.01	0.02
5억원 이하	4.7	0.05	1.02	3.9	0.05	1.29	-0.00	-0.27
10억원 이하	3.4	0.03	0.90	2.9	0.04	1.35	-0.01	-0.46
10억원 초과	3.2	0.03	1.02	2.9	0.05	1.69	-0.02	-0.67
합계	518.9	5.14	0.99	454.7	5.50	1.21	-0.36	-0.22

주: 과세표준 규모별 기부금 통계는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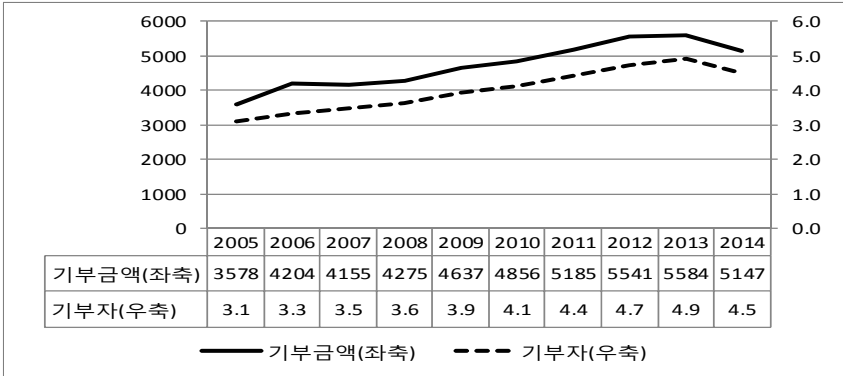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규모), 20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규모),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국세통계연보』상 연말정산 신고자의 특별공제 신청 기부금의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2014년 이후 세액공제) 제도 변화가 일어난 2014년을 기점으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총기부금액은 2005년 3조 6천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5조 6천억원에 이르렀다가 2014년에는 5조 1천억원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소득공제를 신청한 기부자 숫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13년 기준 490만명에 도달하였다가 2014년 450만명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11-5] 기부금 규모 및 공제신청자 추이

(단위: 십억원, 백만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200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총괄), 200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총괄), 201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총괄), 201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총괄),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연말정산 신고자 중 기부금 공제 신청자의 비중 역시 제도 변화와 함께 추세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부금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2005년 26.1%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3년 30.2%에 도달하였다가 2014년 27.0%로 하락하였다. 이런 하락은 제도 변화에 따른 이동인지 추세 전환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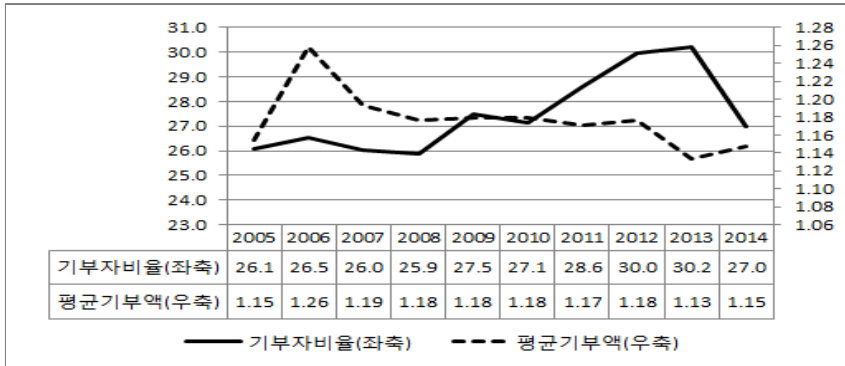
반면 기부자당 평균 기부액은 점진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평균 기부액은 2006년 126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한 후 2013년 113만원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 115만원 수준으로 반등하였다. 그러나 2014년 변동 폭은 연간 2만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였다.

기부금 공제 신청자의 평균 기부액 하락추세는 전반적인 기부율(기부액/급여총액) 하락과 함께 나타났다. 기부율은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 추세는 기부금 공제 관련 세제 변화가 있었던 2014년에도 지속되었다. 2014년도 기부율 하락 폭은 전년도에 비해 0.07%p보다 더욱 확대된 0.15%p를 기록하였다. 결국 2014년에 나타난 평균 기부액의 상승 반전은 소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부율의

대폭적 하락을 상쇄할 정도로 급여총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평균 기부액이 소폭 증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6] 기부금 공제 신청자 비중 및 평균 기부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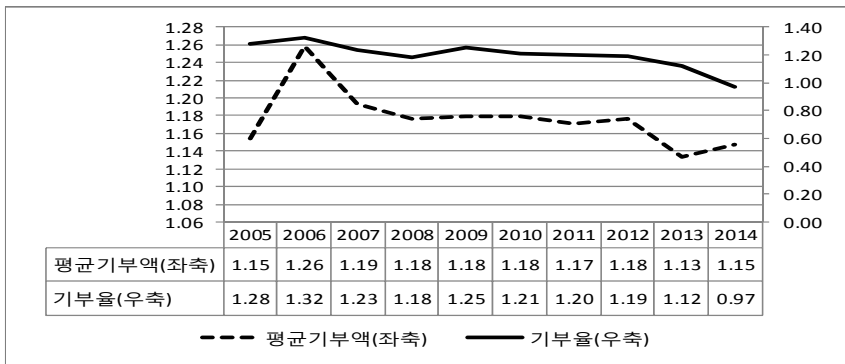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200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총괄), 200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총괄), 201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총괄), 201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총괄),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그림 II-7] 기부금 공제 신청자의 평균 기부액과 기부율 추이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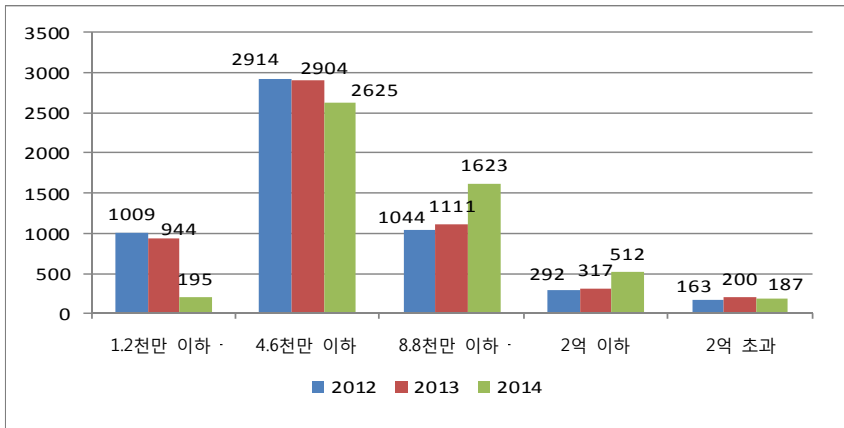


주: 기부율은 기부금 공제신청자의 급여총액 대비 기부액 비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200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총괄), 200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총괄), 201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총괄), 201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총괄),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공제제도 변경으로 인한 기부금 규모 및 기부금 가격 변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과표구간별 기부금 변화를 조사한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도 변경 이후 저소득층의 기부금액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구간별 소득자의 공제신청 기부금액은 과표구간 4,600만원 이하자의 경우 기존의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과표구간 4,600만~2억원 소득자는 상승추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 자들의 기부금액은 2013년 9,440억원에서 2014년 1,950억원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동 구간 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은 세제개편으로 낮아졌는데도 전년보다 큰 하락 폭을 보여준다. 최대 기부계층인 과표 1,200만~4,600만원 소득자도 총 기부금액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 역시 기부금 가격의 변화가 없거나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인데 2014년 총기부금액은 2조 6천억원으로 전년도 2조 9천억에 비해 2,800억원이나 감소하였다.

[그림 II-8] 과표구간별 소득자의 기부금액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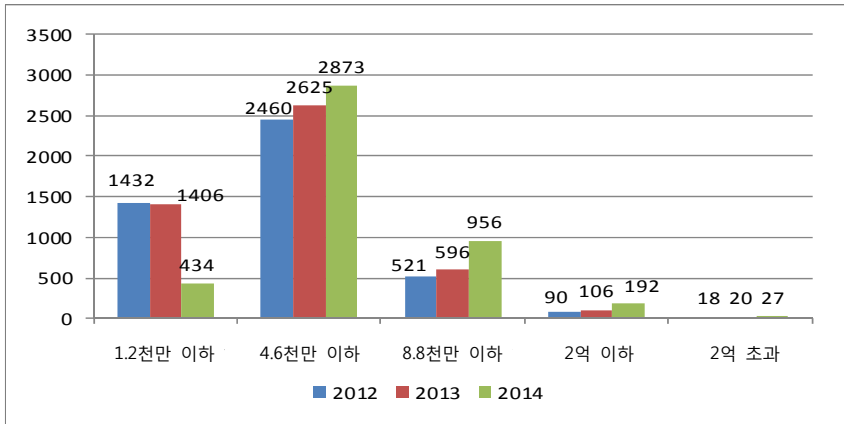
과표구간별 기부금 공제 신청자 규모 역시 과표 1,200만원 이하에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규모는 2012년 143만명에서 140만명

(2013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제도 변경 이후 43만명(2014년)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특히 과표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공제율이 기존 6%에서 15%로 높아져 혜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부금 공제 신청자가 줄어들어 경제적 직관과 배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제도 변화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든 과표 4,600만원 초과 소득자 중 기부금 공제 신청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부금에 대한 조세가격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과표 4,600만~8,8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기부금 공제신청자가 2013년 59만 6천명에서 2014년 95만 6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의 증가추세와 비교하더라도 크게 증가한 수치로 판단된다.

[그림 II-9] 과표구간별 기부금 공제 신청자 추이

(단위: 천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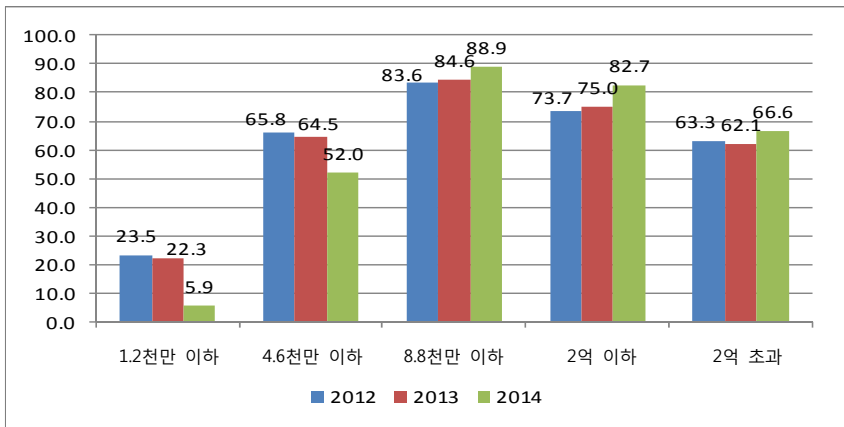
과표구간별 소득자 대비 기부금 공제 신청자 비중도 기부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경제적 직관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기부가격이 하락한 과표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기부자 비율이 2012년 22.3%에서 2013년에는

5.9%로 급락하였다. 반면 기부가격이 상승한 과표 8,800만~2억원 이하 계층의 기부자 비율이 75.0%(2013)에서 82.7%(2014)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억원 초과자의 기부자 비율도 2013년 62.1%에서 2014년 66.6%로 직전연도에 비해 상당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부금 공제 신청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은 대부분 계층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과표구간 2억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2012년 이래 평균 기부금액이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14년 기부금 세제개편에 따라 평균 기부금액 감소 폭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부자 비율이 높은 과표구간 4,600만~8,800만원과 8,800만~2억원 구간에 속한 소득자의 경우 평균 기부금액이 2013년 각각 190만원, 300만원에서 2014년에는 10%내외 감소한 170만원, 270만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과표구간 2억원 초과자의 경우 평균 기부액이 2012년(910만원) 대비 증가한 2013년 1,010만원 수준에서 2014년에는 700만원으로 감소하여 30% 이상 하락하였다.

[그림 II-10] 과표구간별 소득자 대비 기부금 공제 신청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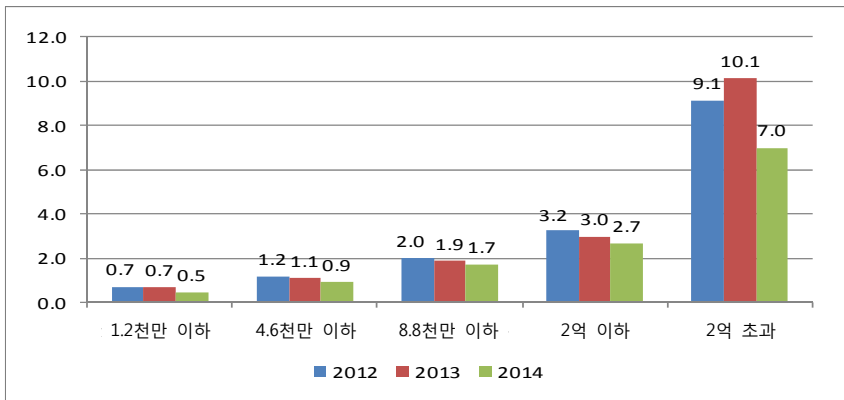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과세표준 구간별 기부금 공제 신청자의 소득수준 대비 기부금액의 비율인 기부율은 과표 1,200만원 이하 계층에서 크게 하락하였으며 1,200만~4,600만원 계층도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 두 구간의 경우 기존의 하락추세가 제도 개편(2014년) 시점을 기준으로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구간은 기부금 가격이 유지 또는 하락한 구간이므로 경제적 직관과 일치하지 않으나 제도 변경의 심리적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였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11] 기부금 공제 신청자의 과표구간별 평균 기부금액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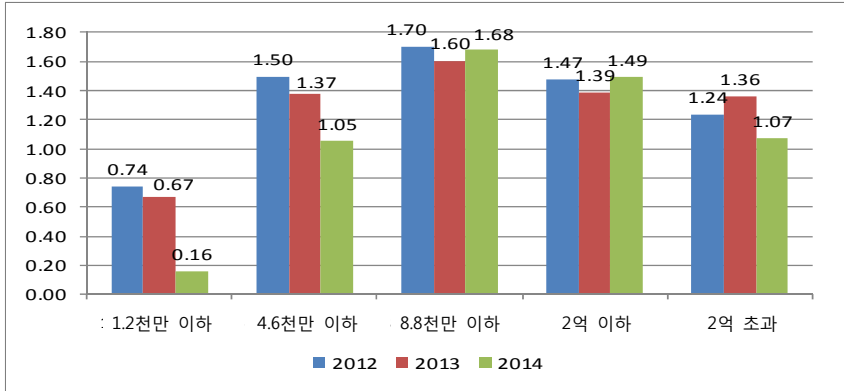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반면, 과표 4,600만~8,800만원, 8,800만~2억원 구간에서는 기부율이 전년의 하락과는 달리 반등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기부금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기부율은 상승하여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런 현상의 잠재적 문제점은 총기부액이 가장 많은 과표구간 1,200만~4,600만원의 중간계층의 기부율이 크게 하락하여 세제를 통한 기부 활성화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II-12] 기부금 공제 신청자의 과표구간별 기부율 추이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Ⅵ(과세표준), 2015 자료 활용 저자 계산

기부금 세제개편 전후 기부금 관련 지표 변화는 전반적으로 총기부액, 기부자 수, 기부자 비율, 평균기부액, 기부율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전년의 추세와 달라진 지표는 총기부액과 기부자 수로서 2013년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는 하락하였다. 이는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축소할 세제개편이 기부금 하락을 유도 또는 심화시켰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부금 가격 변화를 반영하는 과표구간별 지표 변화는 세제개편의 영향보다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세액공제율이 높아진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자들의 모든 기부 관련 지표는 전년도보다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세액공제율이 동일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과표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서도 총기부액, 기부자 비율, 평균기부액, 기부율이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동 계층에서 가격인하 영향을 압도하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세액공제율이 낮아져 기부 혜택이 줄어든 과표 4,600만~2억원 구간에서는 기부자 비율, 기부율이 증가하였으며 기부자의 평균 기부액은 감소하였다. 기부 혜택 축소에도 불구하고 기부자 비율이 증가되었으며 기부율(기부금액/급여총계) 역시 높아져 총기부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부자 평균기부액 하락은 기부가격 상승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과표 2억원 초과자의 경우, 기부자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기부율 하락과 이에 따른 평균 기부금액 하락으로 총기부액은 감소하였다. 동 계층의 평균 기부액은 기부가격 상승이 시사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기부금 세제개편 전후(2013 대비 2014년)의 지표별 변화 방향

과표구간	총기부액	기부자 수	기부자 비율	평균기부액	기부율
~ 1,200만원	하락지속	하락지속	하락지속	하락지속	하락지속
1,200만원 ~ 4,600만원	하락지속	상승지속	하락지속	하락지속	하락지속
4,600만원 ~ 8,800만원	상승지속	상승지속	상승지속	하락지속	상승반전
8,800만원 ~ 2억원	상승지속	상승지속	상승지속	하락지속	상승반전
2억원 초과	하락반전	상승지속	상승반전	하락반전	하락반전
합계	하락반전	하락반전	하락지속	하락지속	하락지속

주: '지속'은 2012년 대비 2013년 변화추세가 2014년에도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며 '반전'은 2012년 대비 2013년 변화추세가 반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

## Ⅲ.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

본 장에서는 2014년 개정된 기부금 공제제도의 변화가 우리나라 가구나 개인들의 기부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그 출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분석자료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기부 의향 및 행태에 관한 횡단면 설문조사 자료<sup>21)</sup>이다. 두 번째 분석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이다. 세 번째 분석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근로소득세 신고자료<sup>22)</sup>이다. 아래에서는 각 자료별 특성, 실증분석 전략 및 분석결과 등을 제시한다.

### 1. 횡단면 설문조사 자료를 통한 분석<sup>23)</sup>

#### 가. 조사설계 및 표본구성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부 의향 및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별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조사대상자는 만 25세부터 64세까지의 우리나라 일반국민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와 응답자 편의에 따라 이메일과 팩스 조사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실제 조사된 유효표본은 취업자 2,031명, 미취업자 268명으로 총 2,299명이었다.

이러한 유효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식은 RDD(Random Digit

---

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 11),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2) 국세청 내부자료(비공개자료)

23) 동 절의 분석은 박명호(2015. 12),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와 공동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됨에 따라 조사설계, 표본구성, 기술통계량에 관한 설명에서 일부 일치함

Dialing)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법이다. 통계청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표본규모를 2천명으로 설정하고 고용형태(임금근로자, 사업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모집단 분포에 비례하게 표본을 할당하였다. 비례배분 원칙에 따르면 미취업자는 약 607명, 취업자는 1,393명을 할당해야 하지만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경제활동참여자) 표본이 기부금 관련 세법개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판단하여 미취업자는 200명으로 축소설계하고, 축소된 양만큼 취업자에서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였다. 지역별 분포는 고용형태별 표본분포에서 확정된 성별 표본 수를 토대로 지역별로 비례하여 할당하였다. 그다음 각 표본에 할당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제 조사된 2,299명의 표본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표본구성 요약

(단위 : 명)

성별	연령별	만25~64세 인구	임금근로자	사업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
전체		2,299	1,444	472	115	268
남자	소계	1,262	831	330	38	63
	25~29세	146	114	8	6	18
	30~39세	347	277	56	3	11
	40~49세	372	240	114	6	12
	50~59세	301	159	115	13	14
	60~64세	96	41	37	10	8
여자	소계	1,037	613	142	77	205
	25~29세	146	120	8	3	15
	30~39세	266	182	27	10	47
	40~49세	311	187	58	23	43
	50~59세	243	106	41	30	66
	60~64세	71	18	8	11	34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기술통계량

### 1)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 비율이 49.4%이며, 비수도권 거주비율은 50.6%를 차지하였다. 광역단체별로는 경기도가 2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20.1%), 부산(7.5%), 경남(5.8%), 인천(5.6%), 경북(5.1%), 대구(4.7%), 충남(4.3%), 세종(0.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55%, 여성 45%로 비슷한 수준의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9%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30대(27.6%), 50대(23.2%), 20대(12.5%), 60대(7.7%) 순이었다. 혼인 여부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65.7%,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34.3%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응답자들의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대체로 높았으며, 이 중 소득수준 5천만~9천만원 미만인 그룹이 87.6%(배우자 있음)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자가 6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24.4%), 대학원졸 이상(8.9%), 중졸 이하(1.9%) 순이었다. 연령이 낮고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 인구통계학적 특징

(단위: 명, %)

	응답자 수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있음	없음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전문대졸)	대학원졸 이상	
전체	2,299	65.7	34.3	1.9	24.4	64.9	8.9	
성별	남성	1,262	64.0	36.0	1.6	17.2	69.2	12.1
	여성	1,037	67.4	32.6	2.2	31.6	60.5	5.6
연령	20대(25~29세)	292	7.4	92.6	0.9	12.4	76.3	10.4
	30대(30~39세)	613	55.3	44.7	0.1	17.3	74.1	8.5
	40대(40~49세)	683	77.2	22.8	0.5	19.6	69.0	10.9
	50대(50~59세)	544	88.1	11.9	3.2	38.7	51.3	6.8
	60대(60~64세)	167	86.4	13.6	11.1	44.3	38.5	6.1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67.3	32.7	2.1	25.0	63.8	9.1
	기타 광역시	695	62.0	38.0	2.7	21.7	65.6	10.0
	그 외 지역	481	65.6	34.4	1.0	25.3	66.1	7.7

〈표 III-2〉의 계속

		응답자 수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있음	없음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전문대졸)	대학원졸 이상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1,444	62.2	37.8	1.3	15.3	71.9	11.4
	사업주/자영업자	472	75.2	24.8	2.0	21.6	67.0	9.4
	전업주부	154	93.6	6.4	3.3	40.7	51.9	4.1
	미취업자	114	34.0	66.0	1.7	32.0	60.1	6.1
	무급가족종사자	115	74.3	25.7	3.6	51.6	39.9	4.9
연평균 소득 수준	1천만원 미만	283	45.5	54.5	3.6	37.9	54.5	4.0
	1~5천만원 미만	1,465	65.3	34.7	1.9	23.3	67.1	7.7
	5~9천만원 미만	468	87.6	12.4	0.0	13.9	69.9	16.2
	9천만원 이상	83	81.7	18.3	1.1	12.0	65.9	21.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급여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연금수령액 등을 종합한 연평균 소득수준은 1천만~5천만원 미만이 56.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천만원 미만(21.8%), 5천만~9천만원 미만(18.9%), 9천만원 이상(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1천만~5천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남성은 75.9%, 여성은 80.2%였으며, 1천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남성이 16.2%, 여성이 27.4%, 반대로 9천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남성이 3.9%, 여성이 2%로 소득분포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20~60대)에서 1천만~5천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각 소득수준에 대한 연령대별 분포 비율만을 비교했을 때 소득수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대가 36.5%, 1천만~5천만원 미만은 30대가 62.4%, 5천만~9천만원 미만은 40대가 31.6%, 9천만원 이상은 50대가 4%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기타 지역 모두 1천만~5천만원 미만의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1천만~5천만원 미만의 연평균 소득수준을 가지는 응답자들이 수도권은 53.1%, 기타 광역시는 57.4%, 그 외 지역은 60.8%로 조사되었다.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1천만~5천만원 미만이 71.9%로 가장 많았고, 5천만~9천만원(21.8%), 1천만원 미만

(3.9%), 9천만원 이상(2.4%) 순이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9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비율이 8.7%로 임금근로자(2.4%)보다 높았으나 1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자도 8.6%로 임금근로자(3.9%)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전업주부는 1천만~5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응답자가 3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천만원 미만(36.9%), 5천만~9천만원 미만(22.8%), 9천만원 이상(0.8%)로 나타나 전업주부이지만 소득이 있는 응답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전업주부와 비슷한 분포 추이를 보여, 1천만~5천만원 미만(38.9%), 1천만원 미만(36.1%), 5천만~9천만원 미만(19.5%), 9천만원 이상(5.4%) 순이었다. 미취업자 중 1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응답자는 75.6%에 달했으며, 1천만~5천만원 미만이 21.7%, 5천만~9천만원 미만 2.7%, 9천만원 이상은 0%로 조사되었다.

〈표 III-3〉 연평균 소득 수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1천만원 미만	1천만~5천만원 미만	5천만~9천만원 미만	9천만원 이상
전체		2,299	21.8	56.3	18.9	3.0
성별	남성	1,262	16.2	59.7	20.1	3.9
	여성	1,037	27.4	52.8	17.7	2.0
연령	20대(25~29세)	292	36.5	58.2	3.8	1.4
	30대(30~39세)	613	21.6	62.4	14.0	2.0
	40대(40~49세)	683	13.2	51.5	31.6	3.8
	50대(50~59세)	544	23.1	53.3	19.6	4.0
	60대(60~64세)	167	27.1	58.5	11.4	3.0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23.2	53.1	20.4	3.2
	기타 광역시	695	20.6	57.4	18.8	3.3
	그 외 지역	481	20.3	60.8	16.5	2.4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1,444	3.9	71.9	21.8	2.4
	사업주/자영업자	472	8.6	61.6	21.1	8.7
	전업주부	154	36.9	39.5	22.8	0.8
	미취업자	114	75.6	21.7	2.7	0.0
	무급가족종사자	115	36.1	38.9	19.5	5.4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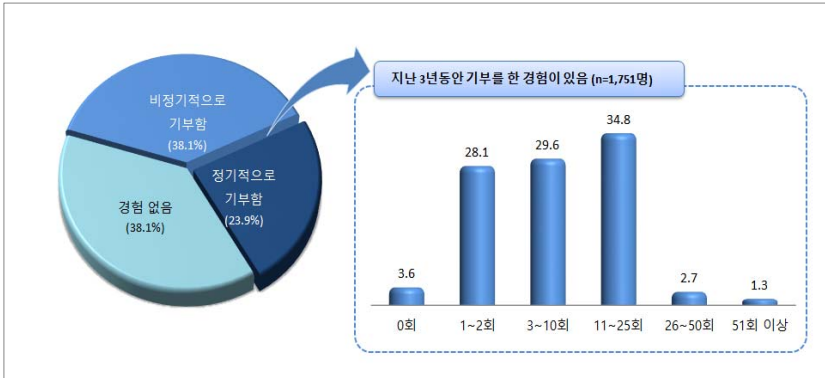
## 2) 기부에 대한 응답 결과

### 가) 지난 3년간 기부한 경험

지난 3년간 공식적인 현물(물품, 주식 등)이나 금전적인 기부 경험을 살펴 보면, '경험 없음'과 '비정기적으로 기부함'이 각각 38.1%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기적으로 기부함'은 23.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난 3년간 기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015년 한 해 동안의 기부 횟수를 살펴보면, '11~25회'가 3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10회'가 29.6%, '1~2회'가 28.1%였으며, '26회 이상'의 기부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1] 지난 3년간 기부 경험 여부 및 연간 기부 횟수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응답자 특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정기적으로 기부함'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비정기적으로 기부함'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 경험이 있는 50~60대 이상 응답자는 2015년 한 해 동안의 기부 횟수가 평균 10회 이상으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기부 횟수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연평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난 3년간 기부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1천만원 미만에서는 '경험이 없다'가 47.8%로 과반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수

준이 높을수록 2015년 한 해 동안의 평균 기부 횟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천만원 이상에서 연평균 10.5회로 가장 높았다.

〈표 III-4〉 지난 3년간 기부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경험 없음	비정기적으로 기부함	정기적으로 기부함
전체		2,829	38.1	38.1	23.9
성별	남성	1,415	37.4	39.9	22.7
	여성	1,413	38.7	36.2	25.1
연령	20대(25~29세)	354	44.9	42.4	12.7
	30대(30~39세)	779	40.4	41.0	18.6
	40대(40~49세)	820	35.7	36.4	27.8
	50대(50~59세)	656	33.8	36.4	29.8
	60대(60~64세)	218	40.5	31.7	27.9
거주 지역	수도권	1,398	36.5	38.2	25.3
	기타 광역시	585	42.4	34.2	23.4
	그 외 지역	845	37.6	40.5	21.8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370	32.9	39.1	27.9
	사업주/자영업자	476	37.8	38.2	24.1
	전업주부	444	42.5	36.7	20.7
	미취업자	418	50.6	35.8	13.6
	무급가족종사자	121	38.0	38.0	24.0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617	47.8	35.7	16.5
	1~5천만원 미만	1,592	37.9	38.7	23.3
	5~9천만원 미만	535	30.1	37.8	32.2
	9천만원 이상	84	21.0	43.9	35.1

주: Base는 만 25~64세 국민(n=2,829명)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5〉 2015년 한 해 동안의 기부 횟수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0회	1~2회	3~10회	11~25회	26~50회	51회 이상	평균
전체		1,751	3.6	28.1	29.6	34.8	2.7	1.3	8.4
성별	남성	885	3.9	29.1	31.7	32.3	2.3	0.8	7.8
	여성	866	3.3	27.1	27.5	37.2	3.1	1.7	9.1
연령	20대(25-29세)	195	5.9	36.6	33.7	22.9	0.9	0.0	5.3
	30대(30-39세)	465	4.9	35.7	28.2	29.9	1.3	0.0	6.3
	40대(40-49세)	527	3.4	28.4	27.3	37.0	3.5	0.4	8.4
	50대(50-59세)	435	1.2	18.0	31.7	41.8	3.2	4.1	11.5
	60대(60-64세)	130	4.1	20.6	30.8	37.3	5.3	1.8	10.5
거주 지역	수도권	887	4.4	28.2	27.1	35.8	3.3	1.1	8.7
	기타 광역시	337	1.9	30.2	30.5	34.7	1.5	1.1	7.8
	그 외 지역	527	3.2	26.6	33.2	33.0	2.3	1.6	8.4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919	3.2	28.3	28.2	36.7	2.7	0.9	8.3
	사업주/자영업자	296	1.0	27.4	33.0	31.9	5.0	1.7	9.7
	전업주부	255	6.6	32.6	22.0	35.6	2.3	0.9	7.9
	미취업자	207	6.2	26.9	37.2	28.6	0.0	1.2	6.3
	무급가족종사자	75	0.6	17.2	38.3	36.0	2.4	5.4	12.8
연평균 소득 수준	1천만원 미만	322	5.1	30.9	28.4	33.3	0.9	1.5	7.6
	1~5천만원 미만	988	3.3	29.3	29.1	34.1	2.6	1.5	8.4
	5~9천만원 미만	374	3.4	23.4	32.4	36.4	4.1	0.3	8.9
	9천만원 이상	67	1.3	23.4	27.4	41.9	4.1	1.8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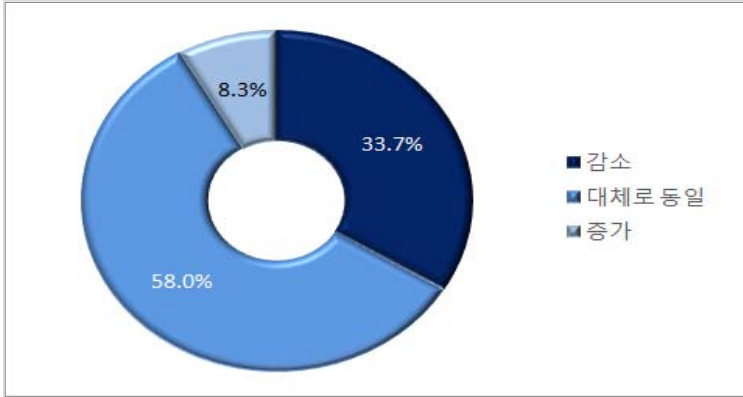
주: Base는 지난 3년간 기부 경험이 있는 응답자 (n=1,751명)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지난 3년 동안 기부 규모의 변화

지난 3년 동안 현물이나 금전적 기부 규모 변화에 대해 ‘대체로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8.0%로 응답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는 ‘감소’ 33.7%, ‘증가’ 8.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 지난 3년간 기부 규모 변화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응답자 특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특성에 상관없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동일’하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감소’했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미취업자는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8%로 가장 높았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대체로 동일’하다는 비율이 72.2%로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동일’하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감소’했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III-6> 지난 3년간 기부 규모 변화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감소	대체로 동일	증가	
전체	1,751	33.7	58.0	8.3	
성별	남성	885	35.1	56.6	8.3
	여성	866	32.3	59.4	8.3
연령	20대(25~29세)	195	44.8	50.5	4.7
	30대(30~39세)	465	41.6	50.5	8.0
	40대(40~49세)	527	32.7	57.7	9.6
	50대(50~59세)	435	23.5	67.6	8.9
	60대(60~64세)	130	27.3	65.0	7.7

〈표 III-6〉의 계속

구분		응답자 수	감소	대체로 동일	증가
거주 지역	수도권	887	35.2	57.3	7.5
	기타 광역시	337	33.7	58.8	7.5
	그 외 지역	527	31.2	58.7	10.1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919	30.1	59.8	10.1
	사업주/자영업자	296	33.5	58.2	8.3
	전업주부	255	36.9	58.2	4.9
	미취업자	207	51.8	44.1	4.1
	무급가족종사자	75	18.0	72.2	9.7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322	41.7	51.3	7.0
	1~5천만원 미만	988	34.3	57.0	8.7
	5~9천만원 미만	374	27.0	64.7	8.3
	9천만원 이상	67	23.5	68.0	8.5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기부 규모 감소의 중요한 요인

지난 3년간 기부 규모가 감소한 이유로 ‘경제적 형편 악화’ 요인이 10점 기준으로 평균 7.50점을 보이며 기부 규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기부단체의 신뢰 감소’(6.26점), ‘심적 동기 하락’(5.48점), ‘세제상 혜택 줄음’(4.87점) 순이었다.

[그림 III-3] 기부 감소의 중요한 요인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응답자 특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기부 감소의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는 ‘경제적 형편 악화’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 대해 ‘보통’ 이하의 중요도를 보였다. 여기서 평균값은 ‘0’에 가까울수록 중요하지 않으며 ‘10’에 가까울수록 매우 중요함, ‘5’의 경우 보통을 의미한다. 미취업자는 ‘경제적 형편 악화’ 요인의 평균이 8.23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해당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급가족종사자집단에서는 ‘세계상 혜택 줄음’ 요인의 중요도가 평균 6.2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수준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경제적 형편 악화’ 요인의 평균값이 가장 높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기부 규모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기부 감소의 중요한 요인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경제적 형편 악화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 감소				
		중요 안함	보통	중요함	평균	중요 안함	보통	중요함	평균	
전체	590	13.1	9.4	77.5	7.50	20.9	19.5	59.6	6.26	
성별	남성	311	13.0	8.4	78.7	7.48	22.7	19.8	57.5	6.11
	여성	280	13.2	10.6	76.2	7.51	18.8	19.2	62.0	6.42
연령	20대(25~29세)	87	19.1	6.3	74.7	7.69	12.2	18.8	69.0	6.78
	30대(30~39세)	193	10.8	8.9	80.3	7.78	20.6	19.7	59.7	6.26
	40대(40~49세)	172	13.5	12.8	73.6	7.25	15.8	18.5	65.7	6.73
	50대(50~59세)	102	14.0	5.5	80.5	7.26	28.6	20.6	50.8	5.68
	60대(60~64세)	35	5.9	14.9	79.2	7.31	45.5	22.6	31.9	4.36
거주 지역	수도권	312	12.8	10.6	76.6	7.43	21.2	16.5	62.2	6.30
	기타 광역시	113	9.4	10.4	80.3	7.61	14.0	27.9	58.0	6.43
	그 외 지역	165	16.2	6.6	77.2	7.55	24.9	19.5	55.7	6.07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277	13.4	10.7	75.9	7.34	20.4	18.7	60.9	6.23
	사업주/자영업자	99	12.6	9.4	78.1	7.19	28.2	16.7	55.1	5.86
	전업주부	94	16.7	12.2	71.1	7.42	16.4	25.3	58.3	6.71
	미취업자	107	9.7	3.7	86.6	8.23	18.0	18.3	63.7	6.37
	무급가족종사자	14	11.1	10.0	78.8	7.52	29.8	26.9	43.3	5.73

〈표 III-7〉의 계속

구분	응답자 수	경제적 형편 악화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 감소				
		중요 안함	보통	중요함	평균	중요 안함	보통	중요함	평균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134	15.4	4.6	80.0	8.10	20.9	11.0	68.1	6.66
	1~5천만원 미만	339	11.8	10.2	78.0	7.40	21.1	23.0	56.0	6.04
	5~9천만원 미만	101	14.5	12.7	72.8	7.08	20.5	17.5	62.0	6.47
	9천만원 이상	16	12.6	12.5	74.9	7.12	19.1	30.7	50.2	6.26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7〉의 계속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심적 동기 하락				세제상 혜택 줄음				
		중요 안함	보통	중요함	평균	중요 안함	보통	중요함	평균	
전체	590	27.8	24.3	47.9	5.48	38.5	22.2	39.3	4.87	
성별	남성	311	32.1	22.5	45.4	5.22	40.1	21.9	38.0	4.87
	여성	280	23.0	26.4	50.7	5.78	36.8	22.4	40.8	4.87
연령	20대(25~29세)	87	25.5	22.0	52.5	5.94	34.1	17.7	48.2	5.12
	30대(30~39세)	193	26.1	18.3	55.6	5.72	29.1	22.3	48.7	5.47
	40대(40~49세)	172	24.9	30.6	44.6	5.57	38.1	28.1	33.8	4.96
	50대(50~59세)	102	32.8	26.0	41.1	4.99	55.6	18.2	26.3	3.77
	60대(60~64세)	35	42.0	27.3	30.7	4.08	54.3	15.0	30.7	3.76
거주 지역	수도권	312	30.7	22.9	46.5	5.27	37.3	21.8	40.9	4.74
	기타 광역시	113	19.5	26.2	54.3	5.78	32.1	24.5	43.4	5.32
	그 외 지역	165	28.0	25.8	46.2	5.68	45.4	21.1	33.5	4.80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277	28.5	22.8	48.7	5.49	39.3	24.3	36.3	4.84
	사업주/자영업자	99	36.5	24.6	38.8	4.83	49.0	20.8	30.2	4.50
	전업주부	94	10.2	35.0	54.8	6.54	25.1	29.1	45.8	5.28
	미취업자	107	30.1	20.4	49.5	5.30	39.7	14.4	45.9	4.77
	무급가족종사자	14	52.0	10.0	38.0	4.26	30.5	0.0	69.5	6.22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134	25.5	17.9	56.6	5.93	32.8	12.4	54.8	5.51
	1~5천만원 미만	339	27.3	26.4	46.2	5.39	41.9	24.2	33.9	4.57
	5~9천만원 미만	101	30.7	26.6	42.7	5.31	36.1	28.8	35.2	4.87
	9천만원 이상	16	37.4	19.0	43.6	4.73	31.3	18.7	49.9	5.94

주: 1. Base는 지난 3년간 기부 규모가 감소한 응답자(n=590명)

2. 평균값은 '0'에 가까울수록 중요하지 않으며 '10'에 가까울수록 매우 중요함 '5'의 경우 보통을 의미한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기부 규모 증가의 중요한 요인

지난 3년간 기부 규모 증가 요인을 조사한 결과, ‘심적 동기 상승’ 요인이 10점 기준으로 평균 6.93점을 보이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부단체의 신뢰 증가’(5.22점), ‘경제적 형편 완화’(4.91점),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함’(2.96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기부 증가의 중요한 요인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응답자 특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심적 동기 상승’ 요인의 평균이 7.22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해당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으며, 미취업자는 ‘경제적 형편 완화’ 요인에서 평균 6.54점으로 기부 규모 증가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연평균 소득수준이 5천만~9천만원 미만은 ‘심적 동기 상승’ 요인에서 평균 7.56점을 보이며 다른 소득수준에 비해 중요도가 높았다. 반면에 9천만원 이상 고소득집단에서는 ‘심적 동기 상승’보다는 ‘경제적 형편 완화’의 평균값이 가장 높아 다른 소득수준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표 III-8〉 기부 증가의 중요한 요인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경제적 형편 완화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 증가				
		중요 안함	보통	중요함	평균	중요 안함	보통	중요함	평균	
전체	146	35.6	16.8	47.5	4.91	30.6	25.0	44.4	5.22	
성별	남성	73	25.6	22.8	51.6	5.28	23.8	27.9	48.3	5.55
	여성	73	45.8	10.7	43.4	4.54	37.6	22.0	40.5	4.88
연령	20대(25~29세)	9	20.3	10.5	69.1	6.17	29.8	10.5	59.7	6.39
	30대(30~39세)	38	28.9	18.5	52.6	5.46	36.2	23.6	40.2	4.87
	40대(40~49세)	51	42.7	21.6	35.7	4.10	31.1	31.0	37.9	5.09
	50대(50~59세)	39	29.1	12.8	58.1	5.59	21.7	18.8	59.5	5.67
	60대(60~64세)	10	64.2	7.6	28.2	3.24	42.8	36.6	20.6	4.33
거주 지역	수도권	67	37.6	10.4	52.0	4.91	33.9	25.6	40.4	4.99
	기타 광역시	25	44.2	22.2	33.7	4.63	36.3	15.4	48.3	5.25
	그 외 지역	54	29.2	22.3	48.5	5.06	23.8	28.7	47.5	5.50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93	31.5	22.9	45.6	5.24	25.4	23.6	51.0	5.80
	사업주/자영업자	25	40.2	8.1	51.7	4.50	20.0	40.1	39.8	5.15
	전업주부	12	80.6	0.0	19.4	2.45	63.4	36.6	0.0	2.52
	미취업자	9	0.0	0.0	100.0	6.54	54.3	0.0	45.7	3.83
	무급가족종사자	7	37.3	17.3	45.4	4.43	49.2	0.0	50.8	4.26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3	29.6	13.9	56.5	5.10	44.3	28.7	26.9	4.13
	1~5천만원 미만	87	38.0	16.7	45.3	4.68	26.7	23.2	50.1	5.42
	5~9천만원 미만	31	34.4	19.2	46.4	5.36	31.0	25.5	43.5	5.72
	9천만원 이상	6	31.4	16.8	51.8	5.23	32.8	34.4	32.8	3.84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8〉의 계속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심적 동기 상승				세제상 혜택 받기 위함				
		중요 안함	보통	중요함	평균	중요 안함	보통	중요함	평균	
전체	146	9.3	15.8	74.9	6.93	72.5	14.4	13.1	2.96	
성별	남성	73	5.4	22.5	72.1	6.98	70.7	14.5	14.8	3.45
	여성	73	13.3	9.0	77.7	6.88	74.3	14.4	11.4	2.45
연령	20대(25~29세)	9	9.8	21.0	69.1	7.66	79.7	9.8	10.5	2.43
	30대(30~39세)	38	7.8	5.3	86.9	7.50	79.0	8.0	13.1	2.93
	40대(40~49세)	51	13.7	19.3	67.0	6.36	68.0	18.8	13.2	3.35
	50대(50~59세)	39	7.3	22.2	70.5	6.78	70.8	12.4	16.9	2.88
	60대(60~64세)	10	0.0	7.6	92.4	7.61	71.8	28.2	0.0	1.85
거주 지역	수도권	67	12.5	7.2	80.3	7.01	73.4	16.7	9.8	2.79
	기타 광역시	25	8.9	30.2	60.9	6.56	73.8	7.7	18.5	3.38
	그 외 지역	54	5.5	19.8	74.7	7.00	70.7	14.7	14.6	2.96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93	7.2	16.4	76.4	7.22	71.5	9.0	19.5	3.26
	사업주/자영업자	25	7.9	15.9	76.2	6.69	64.2	31.9	4.0	2.99
	전업주부	12	28.9	0.0	71.1	5.49	71.1	28.9	0.0	1.81
	미취업자	9	0.0	45.7	54.3	6.63	100.0	0.0	0.0	2.63
	무급가족종사자	7	18.6	0.0	81.4	6.76	83.9	16.1	0.0	1.34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3	24.6	3.9	71.5	5.82	68.1	20.1	11.8	3.08
	1~5천만원 미만	87	7.1	19.0	73.9	7.16	74.1	12.4	13.5	2.81
	5~9천만원 미만	31	0.0	12.3	87.7	7.56	69.1	15.6	15.3	3.33
	9천만원 이상	6	32.8	33.9	33.3	4.32	84.3	15.7	0.0	2.65

주: 1. Base는 지난 3년간 기부 규모가 증가한 응답자(n=146명)  
 2. 평균값은 '0'에 가까울수록 중요하지 않으며 '10'에 가까울수록 매우 중요함, '5'의 경우 보통을 의미한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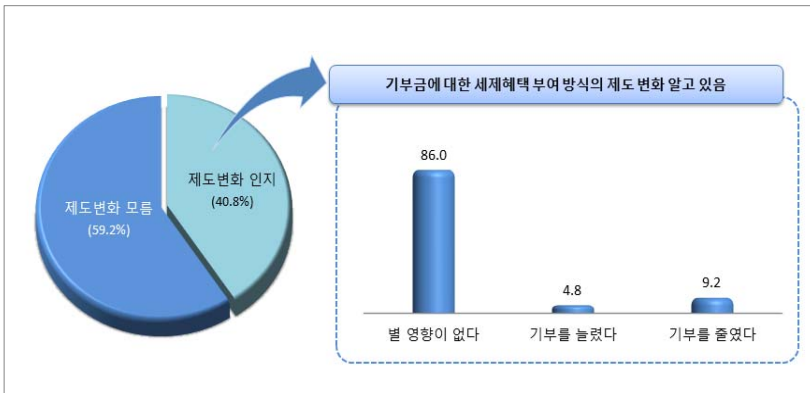
마) 기부금에 대한 제도 변화의 인지 여부

기부금에 대한 제도 변화의 인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제도 변화 모름' 59.2%, '제도 변화 인지' 40.8%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제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응

답자 59.2%를 대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식 제도의 변화가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별 영향이 없다’가 86.0%로 세제혜택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부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부를 줄였다’ 9.2%, ‘기부를 늘렸다’ 4.8%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5] 기부금에 대한 제도 변화의 인지 여부 및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응답자 특성별 결과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대체적으로 ‘제도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의 인지 비율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사업주/자영업자(40.6%), 무급가족종사자(35.5%), 미취업자(30.5%), 전업주부(29.8%) 순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나 9천만원 이상에서 60.1%로 가장 높았다.

제도 변화가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은 ‘영향 없음’이 대체적인 반응이었지만 연령별로는 60대에서 고용형태별로는 사업주/자영업자에서 기부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30대와 미취업자에서는 ‘기부 감소’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영향 없음’ 다음으로 높아 세제 변화가 기부 감소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9〉 기부금에 대한 제도 변화의 인지 여부 및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제도 변화 인지 여부		제도 변화가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인지	비인지	영향 없음	기부 증가	기부 감소
전체		2,829	40.8	59.2	86.0	4.8	9.2
성별	남성	1,415	43.8	56.2	82.5	6.1	11.4
	여성	1,413	37.7	62.3	90.1	3.2	6.7
연령	20대(25~29세)	354	42.1	57.9	87.8	5.1	7.1
	30대(30~39세)	779	43.7	56.3	83.1	5.3	11.6
	40대(40~49세)	820	43.7	56.3	87.0	4.1	8.9
	50대(50~59세)	656	37.2	62.8	89.9	3.9	6.2
	60대(60~64세)	218	27.8	72.2	76.1	8.6	15.3
거주 지역	수도권	1,398	40.1	59.9	87.1	3.6	9.3
	기타 광역시	585	42.5	57.5	83.3	7.3	9.4
	그 외 지역	845	40.6	59.4	86.2	4.8	9.0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370	48.0	52.0	84.6	5.1	10.3
	사업주/자영업자	476	40.6	59.4	81.5	8.8	9.6
	전업주부	444	29.8	70.2	100.0	0.0	0.0
	미취업자	418	30.5	69.5	82.1	3.6	14.3
	무급가족종사자	121	35.5	64.5	95.6	0.0	4.4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617	27.7	72.3	87.3	3.8	8.9
	1~5천만원 미만	1,592	40.8	59.2	87.9	3.8	8.3
	5~9천만원 미만	535	52.7	47.3	82.3	6.9	10.8
	9천만원 이상	84	60.1	39.9	78.3	8.3	13.4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기부금 공제제도 변화 인지 여부 및 기부행위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기부금 공제제도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서 기부행위에 변화 정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한 것에 대한 인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부금 공제제도 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비자영업자이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을 경우 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제도 변화에 대해서 더 잘 인지하고 있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3천만원 이상 9천만원 이하, 9천만원 이상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세제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지만 9천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인지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기부금 공제제도 변화 인지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구분		제도 변화 인지 여부
성별(남자=1)		0.0648 (0.0905)
연령	30대	-0.123 (0.156)
	40대	-0.295* (0.166)
	50대	-0.373** (0.179)
	60대	-0.579** (0.231)
배우자 여부(있음=1)		0.176 (0.112)
자영업자 여부(자영업자=1)		-0.210* (0.111)
지역(수도권=1)		-0.0942 (0.103)
교육수준(대졸 이상=1)		0.242** (0.113)
소득수준	3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0.609*** (0.0995)
	9천만원 이상	1.048*** (0.170)
Observations		2,299
R-squared		0.0335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기부금 공제제도 변화에 따른 기부행위 변화 정도를 순서형 로짓을 통해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부를 감소시킬 것으로 나타나 기부금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화가 기부금 행태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바, 임금근로자는 30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부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자는 40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세제 변화에 따라 기부를 감소시켰다. 그 외의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기부행태 변화 여부 실증분석 결과

구분		기부행태 변화 여부		
		전체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성별(남자=1)		0.0273 (0.187)	0.0321 (0.228)	0.485 (0.421)
연령	30대	-0.706** (0.333)	-0.852** (0.369)	-1.304 (1.143)
	40대	-0.575 (0.353)	-0.501 (0.401)	-1.858* (1.108)
	50대	-0.349 (0.381)	-0.653 (0.448)	-0.901 (1.137)
	60대	-0.145 (0.522)	-1.034 (0.643)	0.698 (1.278)
배우자 여부(있음=1)		-0.232 (0.239)	-0.457 (0.285)	0.262 (0.524)
자영업자 여부(자영업자=1)		0.397* (0.241)		
지역(수도권=1)		-0.126 (0.212)	-0.103 (0.255)	-0.335 (0.439)
교육수준(대졸 이상=1)		-0.144 (0.249)	-0.387 (0.332)	0.511 (0.491)
소득수준	3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0.0927 (0.214)	0.00529 (0.270)	-0.391 (0.444)
	9천만원 이상	-0.133 (0.324)	-0.187 (0.397)	0.0427 (0.619)
관측 수		1,001	690	190
Pseudo R-squared		0.0134	0.0229	0.0793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5. 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라. 소결

본 소절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기부 의향 및 행태에 관한 횡단면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횡단면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을 인식하고 있는 자는 10명 중 4명으로 조사되었다. 제도 변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60%의 사람들의 기부행위는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도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6%는 이런 제도 변화가 자신의 기부행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제도 변화로 인해 기부를 줄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9% 정도였고 오히려 기부를 늘렸다는 응답 비율은 4.8%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횡단면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 중 단지 4.4%만이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으로 인해 기부를 줄였고, 1.7%는 오히려 기부금을 늘렸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94.3%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분석은 인과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상관분석이기에 인과효과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2. 재정패널 자료를 통한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 및 복지정책이 국가재정과 가계 및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재정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도 재정패널조사 자료에는 기부 유형별로 기부금액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 가구가 반복적으로 재조사된다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특성을 활용한다면 각 가구별로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어서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분석자료인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대한 개요, 분석 전략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 가. 분석자료 개요<sup>24)</sup>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재정패널조사(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조세 및 재정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한 실증자료이다. 재정패널이 기획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조세정책이 국가와 개별 경제주체인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조세정책의 평가를 자료 구축 목적 중에 하나로 설정한 재정패널조사는 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 정보 항목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재정패널조사는 조세정책의 변화가 가구 및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기존의 다른 패널조사 자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부금 공제제도의 변화 효과를 추정한다.

한편, 재정패널조사는 매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종합소득신고자 신고가 끝나는 5월부터 9월 말까지 현장실사가 시행된다. 주된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타계식(face to face interview)이다. 따라서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한 횡단면적인 설문조사보다는 응답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고 본다.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조사대상은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 조사와 가구원으로 인정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원 조사로 나누어진다. 조사대상 가구는 제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로서 2008년 시행 초기 구축된 5,014가구와 2009년 포함된 가구를 합한 원표본 가구와 2009년 이후 분가하여 신규 발생한 가구이다. 가구원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함께 생활한 혈연관계의 친족으로 정의하나 6개월 이상 비동거를 했더라도 대학원생을 제외한 학업만을 목적으로 분가한 초중고 및 미혼의 대학생은 가구원으로 인정된다. 가구원 중 조사대상 가구원은 만 15세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며, 이때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보험소득, 기타소득, 정부 현금보조

---

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6. 4)의 재정패널조사 1~7차년도 조사자료 사용자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

금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라 할지라도 연금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III-12>에서는 1~8차까지의 가구와 가구원 수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III-12〉 재정패널조사 차수별 가구, 가구원 현황

(단위: 가구, 명)

구분	가구	가구원
1차(2008년)	5,014	6,919
2차(2009년)	5,039	7,095
3차(2010년)	4,830	6,981
4차(2011년)	4,778	7,863
5차(2012년)	4,740	7,298
6차(2013년)	4,756	7,380
7차(2014년)	4,807	7,559
8차(2015년)	4,854	7,586

자료: 「재정패널조사」 자료(1차~8차년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설문 구성은 가구용 설문은 가구 기본 현황, 주택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및 가치, 가계 지출 현황,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이전소득, 복지현황,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으로 구성된다. 가구원용 설문은 경제활동, 소득 유형별 소득 및 연금·보험 관련 지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세 유형 및 소득공제 현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부금과 관련된 설문항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 단위로 지난 해에 기부금 지출이 있는지를 묻는다. 그런 다음, 개인에게 기부한 경우가 아닌 기관에 기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구원 별로 기부금을 낸 분야 및 분야별 기부금액을 연간 총액으로 묻는다. 이때 기부 분야는 정당,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 종교기관, 기타 등 크게 6개로 구성되었다.

요약하면 재정패널조사는 기부 분야별로 기부금액에 대한 정보가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되었고, 기부에 영향을 주는 가구 및 개인의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매년 반복하여 조사되기 때문에 관측되지 않는

가구의 특성도 통제할 수 있는 패널 자료의 장점도 있다. 특히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변화 전과 후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책 평가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장점이 있다.

## 나. 분석 전략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통한 분석은 가용 정보의 출처 및 정보 수집 단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보를 이용한 개인 단위의 분석이다.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설문응답 가구로부터 일정한 답례금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정보 및 재정패널조사의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 단위의 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재정패널 설문조사상의 정보를 활용한 가구 단위의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의사결정은 대체로 가구 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가구의 경제적 상태가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세법에 따르면 본인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자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기부행위에 대한 분석은 가구 단위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본 절에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가구나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때,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method)을 사용하여 정책 변화의 인과효과를 분석한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받지 않는 통제집단(control group) 간의 차이를 정책 도입 전과 후로 각각 계산한 다음, 정책 도입 후의 차이에서 정책 도입 전 차이를 한 번 더 차감하여 정책에 따른 평균적인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이중차분법에서는 도입된 정책 또는 정책 변화를 처치(treatment)로 부른다.

이러한 이중차분법은 단일차분법에 비해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처치 이전의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특히 패널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은 동일한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특성에 따른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강창희 등(2013)이 주목한

바와 같이 처치의 적용시점이 개인들의 선택에 의해 정해진다면 이중차분 추정치를 처치의 인과효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때 정책의 외생성을 확보하는 추정전략, 즉 처치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는 추정전략이 요구된다.

본 절에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가구나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분석대상 가구나 개인을 근로소득자에 한정한다. 이런 분석대상 선택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에는 기부행위의 동기가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즉, 자영업자는 자신의 사업에 유리할 경우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선택에 편의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서 제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라는 처치가 적용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대상을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여도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처치의 인과효과를 분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또한 본 절의 분석에서는 처치의 시점 간 외생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는, 분석대상 시점에 관한 것이다.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2012년을 처치 이전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런 분석 시점 선택은 재정패널조사 응답자들이 2013년 하반기부터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정책 변화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 중 6차년도와 8차년도 조사자료를 사용한다. 두 번째 조치는 분석대상 근로소득자를 앞서 언급한 3가지 소득 계층 간에 이동이 없고 처치 이전과 이후의 자료가 모두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즉, 처치 이전과 이후의 소득 계층 구분에 변동이 없었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는 처치 적용 여부가 무작위로 결정되지 않고 노동시간 등 자기선택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본 선택을 통해 어떤 경로로 존재할지 모르는 처치 변수의 내생성을 적절하게 통제하였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가구 단위의 분석의 경우 분석대상 가구를 근로소득이 있는

호별이 가구만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복수의 가구원이 소득을 창출하였고 소득의 규모가 크게 상이한 경우 동 가구의 처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분석의 처치집단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나 개인 가운데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라는 처치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계층, 즉 과세표준금액이 4,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계층'과 세부담이 감소하는 계층, 즉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계층'이다. 이에 반해 통제집단은 근로소득자 가운데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라는 처치가 적용되어도 세부담의 변화가 없는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4,600만원 사이에 있는 '중소득 계층'이다.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이용한 개인 단위의 분석에서는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분석대상 개인들을 소득수준별로 계층화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러나 재정패널조사 자료 자체를 이용한 가구 단위의 분석에서는 총급여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나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급여와 과세표준금액의 차이가 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각종 사회보장성 기여금 등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구성됨에 주목하였다. 이런 차이를 유발하는 공제항목들의 크기는 총급여 수준 및 부양가족 수에 주로 의존한다. 이에 착안하여 개인 단위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총급여와 과세표준금액 간의 차이를 11개 총급여 구간 및 7개 가구원 수 구간 등 총 77개의 셀별로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가구를 앞서의 77개 셀별로 구분한 후 각 셀별로 가구의 총급여에서 개인 단위 분석 자료에서 생성된 평균 격차를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과세표준금액을 바탕으로 가구 단위 분석에서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전략 아래에서 본 절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t} = \beta_0 + \beta_1 D_{it}^1 + \beta_2 D_{it}^2 + \beta_3 T_{it} + u_{it}; \quad u_{it} = \alpha_i + \epsilon_{it}$$

위에서 제시된 패널 고정효과 모형에서  $i$ 는 개인 또는 가구를 나타내며,  $t$ 는 처치 적용 이전 시점(0)과 이후 시점(1)을 나타내는 지시자(index)이다. 이때 종속변수  $y_{it}$ 는 기부금을 소득으로 나눈 기부율로 정의한다.  $D_{it}^1$ 과  $D_{it}^2$ 는 처치 적용 이전 시점에는 모든  $i$ 에 대해 0, 처치 적용 이후 시점에는 각각의 처치집단(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에 속할 경우에만 1의 값을 갖는 변수이다. 따라서 통제집단에 속한  $i$ 는 처치 적용 이후 시점에서도 0의 값을 갖는다.  $T_i$ 는 정책 변화 이전 시점에는 0, 이후 시점에는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alpha_i$ 는 종속변수  $y_{it}$ 에 영향을 주는 모든 미관측 요인들로 시간에 따라 변동이 없는 요인들이다.  $\epsilon_{it}$ 는 통상의 순수 오차항이다. 위의 추정모형을 회귀분석하여  $D_{it}^1$ 과  $D_{it}^2$ 의 계수를 각각 추정하면 이것이 바로 각 처치집단(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의 이중차분 추정치가 된다. 즉, 각 처치집단에 대한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의 평균 처치효과(ATE)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 다. 분석 결과

###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개인들에 대한 분석

#### 가) 기초통계량

〈표 Ⅲ-13〉에서는 기부금 관련 세제 변화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재정패널 6차년도와 8차년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초 통계를 제시한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개인은 총 1,874명이며, 개인이 속한 가구의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 계층,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소득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 저소득 계층 표본 수는 1천개, 고소득 계층 표본 수는 140개, 나머지 중소득 계층은 734개이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개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부금, 재정패널 가구자료상 가구 기부금, 소득의 4가지 변수이다. 여기서 소득이란 개인 총소득에서 당첨금, 경조사,

각종 연금의 일시금 등과 같은 일시소득을 뺀 소득을 의미한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평균 기부금 규모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6차년도에 비해 8차년도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재정패널 가구자료의 평균 기부금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평균 기부금 규모와는 달리 모든 계층에서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한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생성한 기부율(기부금/총급여)의 평균은 6차년도 및 8차년도 모두 소득 계층이 올라감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계층의 기부율은 시간에 따라 증가한 반면 중소득 및 고소득 계층의 기부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대비 재정패널조사의 가구 기부금액 비율을 기부율로 정의한바, 저소득 계층과 중소득 계층의 기부율은 시간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지만 고소득 계층의 기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개인 단위 분석 관련 기초통계

(단위: 천원, %)

변수	6차			8차		
	저소득 계층	중소득 계층	고소득 계층	저소득 계층	중소득 계층	고소득 계층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18,900 (8,861)	52,400 (12,000)	107,000 (27,600)	20,000 (8,263)	55,700 (11,800)	110,000 (25,900)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부금	173 (744)	794 (1,344)	2,140 (3,321)	172 (311)	756 (1,140)	2,013 (3,288)
재정패널 가구자료 기부금	276 (971)	716 (1,525)	1,730 (3,090)	283 (1,016)	761 (2,238)	1,780 (3,483)
소득 <sup>1)</sup>	21,600 (17,900)	54,100 (13,100)	115,000 (57,600)	23,200 (13,800)	57,900 (13,500)	115,000 (30,200)
기부율 <sup>1)</sup>	0.74 (0.0336)	1.4 (0.0229)	1.92 (0.0290)	0.96 (0.0141)	1.28 (0.0184)	1.73 (0.0282)
기부율 <sup>2)</sup>	1.48 (0.0548)	1.28 (0.0279)	1.55 (0.0272)	1.5 (0.0541)	1.3 (0.0364)	1.47 (0.0292)
표본 수	500	367	70	500	367	70

주: 1.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1) 소득은 개인 총소득에서 당첨금, 경조사, 각종 연금의 일시금 등과 같은 일시소득을 뺀 소득을 말한다.

2) 기부율 1 =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부금 /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3) 기부율 2 = 재정패널 가구자료 기부금 /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자료: 재정패널 6차, 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나) 분석 결과

본 분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보를 이용한 개인 단위의 분석이다. <표 Ⅲ-14>는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이중 차분법으로 추정된 결과를 나타낸다. 모델 1과 2의 종속변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부금을 총급여로 나눈 기부율이다. 모델 3과 4의 종속변수는 재정패널조사 가구자료상 가구 기부금을 총급여로 나눈 기부율이다.

기부금의 규모에 대해 재정패널조사라는 별도의 정보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부금 공제 정보는 개인이나 그 부양가족이 행한 모든 기부금을 파악하기 어려운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공제가 불가능한 기부금인 비지정 기부금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이라도 공제 한도액이 설정된 기부금 유형이 존재하고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이 없거나 기부금명세서에서 누락된 기부금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 변경 이전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과 세액공제대상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제대상 기부금이었지만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과거의 기부금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한편 모델 1과 3은 추가적인 통제변수가 없는 경우이고 모델 2와 4는 통제변수로 총소득에서 당첨금, 경조사, 각종 연금의 일시금 등과 같은 일시소득을 뺀 소득을 사용하였다.<sup>25)</sup>

추정 결과를 보면, 처치적용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 $D_{it}^1$ ,  $D_{it}^2$ )들은 모두 예상되는 부호를 지녔다.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라는 처치로 세부담이 감소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정책 변화의 평균 처치효과는 양(+)의 부호를 가진 반면, 세부담이 증가하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정책 변화의 평균 처치효과는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그러나 고소득 계층에 대한 정책 변화의 평균 처치효과는 모든 모형에서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고소득 계층에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율의 감

25) 총소득 자체를 통제변수로 사용해도 결과는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를 야기하는 인과효과가 없음을 시사한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정책 변화의 평균 처치효과는 모델 1과 2의 경우에만 10% 유의수준 아래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율의 증가를 야기하는 인과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분석대상 표본을 다양하게 변화시켜도 유지되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보를 반복된 횡단면 자료로 간주한 분석이나 소득의 위치가 두 시점 간 가변적인 균형 패널 분석에서도 고소득 계층에 대한 부(-)의 인과효과는 없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양(+의 인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sup>26)</sup>

〈표 III-14〉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설명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저소득 처치 지시변수( $D_{it}^1$ )	0.0034* (-0.0020)	0.00329* (-0.0020)	7.74e-05 (0.0026)	-7.39e-05 (0.0026)
고소득 처치 지시변수( $D_{it}^2$ )	-0.0008 (-0.0037)	-0.00088 (-0.0037)	-0.0009 (0.0049)	-0.0012 (0.0049)
8차년도 더미 ( $T_t$ )	-0.0012 (-0.0015)	-0.00103 (-0.0015)	0.0001 (0.0019)	0.0004 (0.0020)
소득		-3.61e-11 (-5.13E-11)		-6.73e-11 (6.65e-11)
상수항	0.0109*** (-0.0007)	0.0124*** (-0.0022)	0.0141*** (0.0009)	0.0169*** (0.0029)
표본 수	1,734	1,734	1,734	1,734

주: 1.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2. 소득은 개인 총소득에서 당첨금, 경조사, 각종 연금의 일시금 등과 같은 일시소득을 뺀 소득을 말한다. 자료: 재정패널 6차, 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6) 이런 분석결과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 2) 재정패널조사 가구에 대한 분석

### 가) 기초통계량

〈표 Ⅲ-15〉에서는 기부금 관련 재정패널에서 조사한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재정패널 6차년도와 8차년도의 기초통계를 요약하였다. 대상 가구는 6차년도와 8차년도에 모두 존재하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은 없고,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이며 가구의 소득 계층에 변화가 없던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사연도별 가구 수는 528가구이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총소득, 근로소득, 순자산, 가구원 수, 기부금이며 순자산은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주택관련 자산, 기타부동산자산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가구별 평균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소득 계층이 올라가면서 기부금 규모는 증가하며 소득 계층별 기부금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6차년도에 비해 8차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율 변수도 소득 계층이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계층별 기부율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6차년도에 비해 8차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재정패널조사 가구 단위 분석 관련 기초통계

(단위: 만원, 명)

	6차			8차		
	저소득 계층	중소득 계층	고소득 계층	저소득 계층	중소득 계층	고소득 계층
총소득	2,359.3 (1,048.9)	5,407.8 (1,203.3)	12,311.9 (6,443.5)	2,547.6 (1,625.1)	5,729.6 (1,304.0)	12,045.7 (3,502.7)
근로소득	2,072.5 (718.1)	5,225.8 (1,128.9)	11,469.3 (3,695.5)	2,084.3 (706.0)	5,448.7 (1,172.1)	11,748.1 (3,322.5)
순자산	9,130.1 (16,606.3)	21,509.5 (24,501.1)	65,854.9 (72,823.1)	10,184.7 (24,468.7)	21,735.6 (18,247.9)	61,829.6 (55,503.5)
가구원 수	2.28 (1.28)	3.17 (1.20)	3.60 (0.86)	2.33 (1.36)	3.30 (1.19)	3.58 (0.86)
기부금	22.2 (64.5)	78.1 (172.3)	230.2 (452.2)	20.5 (65.3)	73.3 (204.3)	168.0 (346.3)
기부율 1	0.0115 (0.0344)	0.0145 (0.0302)	0.0209 (0.0415)	0.0096 (0.0297)	0.0130 (0.0347)	0.0148 (0.0325)

〈표 Ⅲ-15〉의 계속

	6차			8차		
	저소득 계층	중소득 계층	고소득 계층	저소득 계층	중소득 계층	고소득 계층
기부율 2	0,0087 (0,0264)	0,0140 (0,0292)	0,0198 (0,0401)	0,0078 (0,0238)	0,0125 (0,0334)	0,0144 (0,0313)
표본 수	243 (230)	223 (213)	62 (59)	243 (240)	223 (219)	62 (60)

주: 1. 변수들의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하고 표본 수의 ( ) 안은 순자산의 표본 수이다.

2. 기부율 1 = 재정패널 가구자료 기부금 / 재정패널 가구자료 근로소득(총급여)

기부율 2 = 재정패널 가구자료 기부금 / 재정패널 가구자료 총소득

자료: 재정패널 6차, 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나) 분석 결과

본 소절에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다. 가구용 설문조사에서 획득한 기부금 자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부금 공제자료를 활용하는 것보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장점은 가구 단위의 기부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비지정기부금 및 한도를 벗어난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설문 응답자가 모든 가구원의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계 등에 의한 응답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재정패널 자료는 세법개정안 발효시점인 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2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6차조사 자료와 2014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8차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3년의 7차조사 자료는 2013년 8월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람들이 정책 변화를 미리 예상하여 기부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외하였다.

아래의 〈표 Ⅲ-16〉은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모델 1과 2의 종속변수는 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기부금 합계액으로 정의된 기부율이다. 모델 3과 4의 종속변수는 가구의 총소득 대비 기부금 합계액으로 정의된 기부율이다. 한편 모델 1

과 3은 추가적인 통제변수가 없는 경우이고 모델 2와 4는 통제변수로 총소득과 순자산 및 가구원 수를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처치적용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 $D_{it}^1$ ,  $D_{it}^2$ )들은 모든 모형에서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가구의 기부율에 미치는 인과효과가 저소득 계층이나 고소득 계층 모두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총소득, 순자산 및 가구원 수를 통제해도 유지되었다. 또한 기부금 유형별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바 모든 모형에서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sup>27)</sup> 이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가구의 전체 기부율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의 기부율에도 인과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

〈표 III-16〉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설명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저소득 처치 지시변수( $D_{it}^1$ )	-0.0004 (0.0027)	0.0006 (0.0024)	0.0005 (0.0025)	0.0014 (0.0023)
고소득 처치 지시변수( $D_{it}^2$ )	-0.0047 (0.0041)	-0.0021 (0.0038)	-0.0040 (0.0039)	-0.0018 (0.0035)
8차년도 더미 ( $T_t$ )	-0.0014 (0.0019)	-0.0021 (0.0018)	-0.0014 (0.0018)	-0.0019 (0.0016)
총소득		-1.73e-07 (5.07e-07)		-5.20e-07 (4.75e-07)
순자산		-2.68e-07*** (7.44e-08)		-2.38e-07*** (6.97e-08)
가구원 수		0.0011 (0.0025)		0.00076 (0.0023)
상수항	0.0138*** (0.0009)	0.0169** (0.0074)	0.0122*** (0.0008)	0.0172** (0.0069)
표본 수	1,056	1,021	1,056	1,021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재정패널 6차, 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7) 분석결과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 라. 소결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개인이나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이중차분 추정치가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라는 처치의 인과효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분석대상 개인이나 가구를 통제하였다. 이를 통해 처치 적용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들( $D_{it}^1$  과  $D_{it}^2$ )과 오차항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을 적절하게 통제하려고 하였다.

재정패널 조사에서 확보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보를 이용한 개인 단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계층에 대한 정책 변화의 평균 처치효과는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율의 감소를 야기하는 인과효과가 없음을 시사한다. 반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정책 변화의 평균 처치효과는 일부 모형에서 10% 유의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율의 증가를 야기하는 인과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재정패널조사 자료 자체를 사용하여 가구 단위의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정책 변화의 평균 처치효과는 10% 유의수준 아래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구 단위의 분석에서는 고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 계층에서도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율의 감소를 야기하는 인과효과가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낳는 이유를 찾는 데 횡단면 설문조사의 응답결과가 도움이 된다. 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부금의 증가 요인으로 심리적인 동기가, 감소 요인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4.0%, 77.5%나 되었다. 반면 세제상 혜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3.1%, 39.3%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개인이나 가구의 기부행위가 세제상 혜택보다는 자신의 심리적인 동기나 경제적 형편에 좌우됨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 3.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한 분석

#### 가. 배경

국가는 개인 또는 기업의 공익목적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을 통해 장려하고 있다. 기부금으로 지출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부담을 경감해 주어 기부금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은 실질적으로 기부금을 정부와 기부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방식은 기부금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에 대해 암묵적 차등을 줄 수 있다. 2013년까지 적용되었던 소득공제 방식의 조세지원은 기부금 지출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즉 국가적으로 공익목적 등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자를 자금흐름의 통로로 생각하여 동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소득자에게 미치는 기부금 조세지원의 세부담 변화효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개인소득세제가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 지출로 인해 감소하는 소득세액은 (기부금액 × 소득세 한계세율(6~38%))로 나타나는데, 동일한 기부금액에도 불구하고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대한 기부금 조세지원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의 기부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동일한 기부금액에 대해 존재하는 조세지원금액의 격차를 없애주기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세액공제 방식은 기부금액에 일정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만큼(즉 기부금액 × 세액공제율)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이 없어지게 된다.<sup>28)</sup> 이러한 방식은 소득자에 관계없이 기부금에 대한 동일한 국가보조가 이루어지

28) 물론 공제대상인 소득세액이 기부금 세액공제액에 미달하면 허용되는 세액공제를 다 사용할 수 없다.

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방식 전환으로 개인소득자들이 느끼는 기부금 지출의 경제적 부담은 달라지게 된다. 즉 개선된 제도하에서 제공되는 공제율 15%보다 소득세 한계세율이 높았던 소득자의 경우 기부금 지출에 대한 자신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소득자의 경우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자들의 반응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본 장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변화가 야기하는 기부자의 반응 정도를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표 III-17〉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의 변화

(단위: %)

과세표준	2013년 귀속(소득공제)	2014년 귀속(세액공제)
~ 1,200만원	6	15(30)
1,200만 ~ 4,600만원	15	15(30)
4,600만 ~ 8,800만원	24	15(30)
8,800만 ~ 1억 5천만원	35	15(30)
1억 5천만원 초과	38	15(30)

주: ( ) 안은 기부금액 2천만원 초과 시 적용되며, 2013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첫 1원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의미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section=&tabNo=10&qury=%EC%86%8C%EB%93%9D%EC%84%B8%EB%B2%95&x=0&y=0#접속일: 2016. 7. 4.>

## 나. 추정모형

본 연구에서 기부금의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모형은 Auten, Sieg and Clotfelter(2002)과 같이 개인의 효용 극대화 문제의 해에서 도출할 수 있다. 즉 개인의 효용함수( $U(\cdot)$ )를 시간분리적(time separable) 특성을 가지는 기부금( $G_t$ )과 소비( $C_t$ )의 함수로 정의할 때, 개인의 의사결정은 아래와 같은 기부금과 소비의 미래경로에 따라 결정되는 기대효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미래 효용의 시차간 차이는 할인율  $\beta$ 로 조정한다.

$$E_t \left\{ \sum_{s=t}^{\infty} \beta^{s-t} U(G_s, C_s) \right\}$$

개인의 효용함수를 제약하는 예산제약식은 매기간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된다. 즉 기간 간 총소득 균형식으로 t년도의 소비와 기부금, 차년도 이월 자산의 합계는 전년도 이월 자산, 당년도 세후 소득의 합과 동일하다는 제약식이다.

$$C_t + G_t + W_{t+1} = (1+r_t)W_t + Y_t - T_t(r_t W_t, Y_t, G_t)$$

여기서  $W_t$ 는  $t$ 기 초에 보유한 자산이며  $r_t$ 는 이자율, 세부담 함수  $T_t(\cdot)$ 는 자본 소득( $r_t W_t$ ), 노동소득( $Y_t$ ), 기부금( $G_t$ )에 따라 변화되는 세금을 결정하는 함수다.

기대효용 최대화를 위한 일계조건(First-order condition)을 도출하면 한시점 내에서 최적 자원배분조건은 소비와 기부의 한계효용 비율이 각각 가격의 비율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출 1원당 한계효용이 소비와 기부행위에 같도록 지출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tau_t) \frac{\partial U}{\partial C_t} = \frac{\partial U}{\partial G_t}$$

위의 식에서  $(1-\tau_t)$ 는 기부금의 가격, 즉 (1-기부금 공제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인데, 세금을 납부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소비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주는 기부의 영향을 조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시점간 소비수준을 결정하는 최적조건은 예산제약식의 잠재가격인 라그랑지 승수를 통해 도출될 수 있다. 최적조건을 만족하는 라그랑지 승수의 시점간 관계는 현재 예산제약의 잠재가격과 미래 예산제약의 잠재가격에 세후이자율을 적용한 기댓값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lambda_t = E_t(R_{t+1}\lambda_{t+1})$$

여기서  $R_t = (1 + (1 - \tau_t)r_t)$ 이며  $\lambda_t$ 는 라그랑지 승수이다. 두 일계조건을 통해 도출되는 최적소비량( $C_t^*, G_t^*$ )은 closed-form으로 도출되지 않으므로 선형근사식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선형근사식 형태는 log-log 방정식이다.

박기백(2010), 송헌재(2013) 등은 다음과 같은 log-log 선형근사식을 이용하여 최적 기부금액을 추정하였다.

$$\ln(g_{i,t}) = \alpha_t + \beta_1 \ln(Y_{i,t}) + \beta_2 \ln(P_{i,t}) + \gamma Z_{i,t} + \epsilon_{i,t}$$

박기백(2010)은 단년도 서베이자료 전체에 동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송헌재(2013)는 소득세 신고 서류 제출자만을 대상으로 패널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표본선택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Heckman two stage Model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득세 신고서류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분포를 반영하여 두 번째 단계에서 기부금 모형을 추정하였다.

Bakija and Heim(2011)은 기부금 지출의 동태적인 성격(즉 기부금 지출의 시간별 대체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소득 및 가격의 과거 및 미래 변화율 변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log-log 모형을 추정하였다.<sup>29)</sup> Tobit 모형을 바탕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중 55% 내외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기부금 지출 여부 결정 과정을 포함한 Heckman two stage Model도 이용하였다.<sup>30)</sup>

29) 검토 모형에서 표본선택 편이와 기부가격의 시차효과(기부의 시점간 이동효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이중차분(Differences-in-Differences) 모형은 제외하였다. 실제 단순한 이중차분 분석결과 기부의 가격탄력성은 양(+)의 값을 보여 경제적 직관과 일치하지 않았다.

30) Heckman Two stage model은 기부금 지출자의 비중이 56% 수준으로 낮아 이를 바탕으로 전체 기부금 지출 분포를 복원하는 것이 또 다른 오차를 유발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추정하였다.

$$\ln(g_{i,t}) = \alpha_t + \beta_1 \ln(Y_{i,t}) + \beta_2 \ln(P_{i,t}) + \gamma Z_{i,t} + \epsilon_{i,t}$$

Heckman two stage Model의 1단계에서는 기부금 지출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Probit 모형을 추정하는데 2단계 추정모형과의 모형식별을 위해 배제변수로 이용한 변수는 세대주 변수이다. 세대주 여부는 가구의 주 소득자로서 기부금 공제신청 여부와 상당한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즉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들의 기부금을 모아서 공제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주 여부와 기부금 공제 신청금액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기부금 공제 신청금액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근로소득 유무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효과가 동일하여,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구주로서의 공제금액 모으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졌기 때문이다.<sup>31)</sup> 2단계에서는 기부금 공제 신청금액이 양(+의 값을 갖는 소득자에 대해 기부금 공제 신청자의 분포확률변수(즉 Inverse Mill's ratio)를 추가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소득신고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모형은 전년도 소득에 의해 당해연도 기부금이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에 따른 것이다. 전년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과 환급이 소득을 획득한 다음연도(2~3월)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많은 경우 총급여가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납세자들은 기부금의 세 부담 변동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소득자들은 연초 연말정산과 환급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ln(g_{i,t}) = \alpha_t + \beta_1 \ln(Y_{i,t-1}) + \beta_2 \ln(P_{i,t-1}) + \gamma Z_{i,t} + \epsilon_{i,t}$$

31) 물론 세대주 여부 변수는 기부금 공제 신청금액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소득세 신고자료에서 더 나은 외생변수를 발견하기 어렵다.

## 다. 분석자료

기부금 가격탄력성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근로소득자의 국세청 신고자료(즉 연말정산 자료)<sup>32)</sup>에서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소득자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정렬한 이후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하였다. 이에 따라 2011~2015년 귀속소득에 대해 연간 10만명의 패널자료, 즉 총 50만건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자료에 포함된 변수는 총기부금·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과 같은 기부금 관련 변수와 총급여, 연령, 성별, 인적공제자 수 등 근로소득자 특성 관련 변수들이다. 다만 소득세 신고자료 중 세액계산에 필요한 자료만 포함하고 있어 가구규모 등 기부금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포함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샘플링 자료의 기초통계량에 따르면 5년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급여는 5,100만원 수준이며 결정세액은 약 299만원, 기부금액은 71만원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중 기부금 공제 신청자 비율은 56% 수준이며 5년 연속 기부금 공제 신청을 한 납세자의 비중은 39% 수준이다. 부양가족의 숫자는 소득세 신고자료상 나타나는 기본공제 인원 수로서 가구규모를 나타내기보다 근로소득자에 연계된 피부양자 수를 의미한다.

〈표 III-18〉 기초통계량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연령	499,990	44.09	9.88	18	96
성별	500,000	0.30	0.46	0	1
내외국인 구분	500,000	1.00	0.06	0	1
세대주 구분	500,000	0.70	0.46	0	1
부양가족 수	499,924	2.68	1.65	0	11
외국인단일세율 적용구분	500,000	0.00	0.01	0	1
총급여(원)	500,000	51,238,542	47,583,713	0	5,005,900,000
과세표준(원)	500,000	25,793,169	41,757,729	0	4,854,832,800
결정세액(원)	500,000	2,986,610	12,885,968	0	1,773,576,464

32) 국세청 내부자료(비공개자료)

〈표 III-18〉의 계속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총기부금 공제대상 금액	500,000	711,115	2,401,461	0	745,911,603
기부가격	500,000	0.87	0.05	0.62	0.94
기부여부1	500,000	0.56	0.50	0	1
기부여부2	500,000	0.39	0.49	0	1

- 주: 1. 성별은 남성은 0, 여성은 1의 값을 갖도록 설정  
 2. 내외국인 구분은 외국인은 0, 내국인은 1의 값을 가진  
 3. 세대주 구분은 세대원의 경우 0, 세대주의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변수  
 4.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구분은 외국인단일세율 미적용자는 0,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자는 1  
 5. 기부가격은(1-명목한계세율)  
 6. 기부여부 1은 총기부금 공제 대상금액이 0보다 큰 경우 1의 값을 갖도록 설정된 변수  
 기부여부 2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총기부금 공제 대상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만 1의 값을 갖도록 설정된 변수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기부금 공제 신청자의 비율은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전년도보다 약 7%p 하락한 52.1% 수준이었으며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도 전년 127만 6천 원에서 117만 1천원으로 하락하였다. 기부금 종류별로는 공제금액 한도가 없는 법정기부금액이 20% 이상 감소하였으나 한도가 있는 지정기부금액은 그보다 크게 낮은 7% 하락하였다.

소득구간별 기부자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였는데 2013년 40.3%에서 2014년 28.9%로 급락하였다. 이러한 기부공제 신청자의 비중 하락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축소되어 1억 원 초과 소득자의 경우 오히려 0.1%p 증가하였다.

〈표 III-19〉 기부금 관련 변수의 연도별 추이

(단위: 원 %)

연도	평균 총급여	기부자 비율	총기부금 공제대상금액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2011	45,963,181	55.52	1,248,388	n.a	n.a
2012	48,758,261	57.86	1,297,689	n.a	n.a
2013	51,328,105	59.27	1,275,809	96,896	1,175,773
2014	53,668,076	52.06	1,171,028	76,621	1,093,597
2015	56,475,086	55.94	1,333,394	85,448	1,245,492

- 주: 기부자 비율은 연도별 총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이 0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비율로 산출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기부자들의 평균값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III-20〉 소득구간별 기부자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5,500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11	35.55	77.23	85.01	85.69
2012	38.64	79.11	86.03	86.71
2013	40.29	80.24	87.30	87.43
2014	28.93	76.54	86.59	87.53
2015	34.66	79.63	86.78	88.27

주: 기부자 비율은 연도별 총기부금 공제 대상금액이 00이상인 근로소득자의 비율로 산출 소득구간은 201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III-21〉 소득구간별 평균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추이

(단위: 원)

연도	5,500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11	684,725	1,065,468	1,499,137	2,495,534
2012	705,108	1,103,059	1,589,016	2,676,737
2013	702,767	1,089,690	1,538,814	2,690,823
2014	607,488	951,307	1,357,560	2,293,190
2015	716,198	1,140,422	1,539,264	2,731,180

주: 소득구간은 2015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III-22〉 소득구간별 평균 법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추이

(단위: 원)

연도	5,500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13	30,051	57,343	95,343	347,940
2014	27,613	49,028	77,152	214,860
2015	30,204	59,490	80,451	265,421

주: 소득구간은 2015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III-23〉 소득구간별 평균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추이

(단위: 원)

연도	5,500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13	671,302	1,027,597	1,440,084	2,337,930
2014	579,505	902,103	1,280,283	2,074,471
2015	683,792	1,079,735	1,456,985	2,459,654

주: 소득구간은 2015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가격탄력성 추정을 가능케 하는 외생적 제도 변화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2014년)과 함께 최고세율 38% 구간 신설, 과표구간 조정 등이다. 2012년에는 38%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고 2014년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최고세율 구간 인하가 외생적으로 이루어져 기부금의 가격탄력성 추정을 위한 변동을 제공하고 있다.

〈표 III-24〉 연도별 종합소득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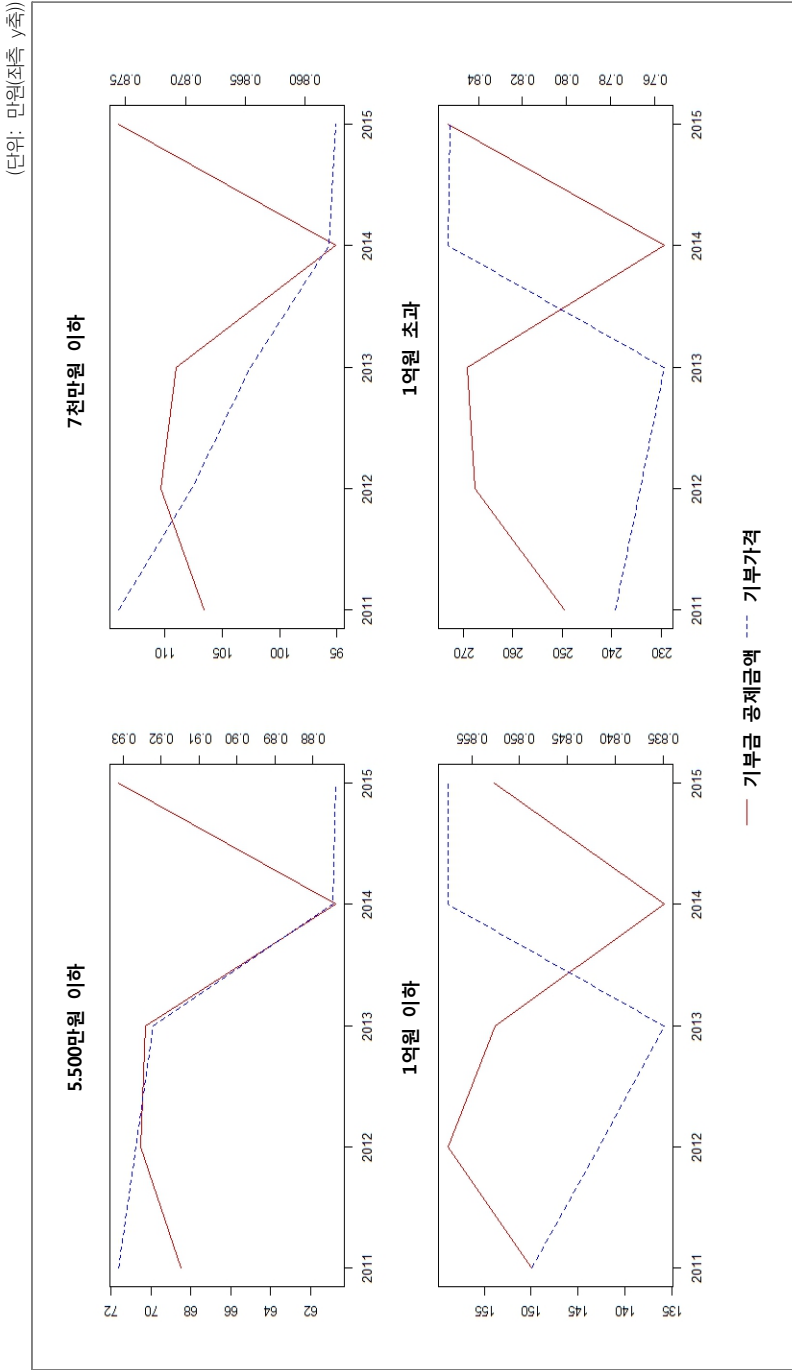
(단위: %)

과세표준	2011	과세표준	2012~2013	과세표준	2014~2015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3억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1억 5천만원 초과	38

자료: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정책연구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 제2편 세목별 발전방향, 2015. p. 8 (표 II-1).

총급여수준 구간별 기부금과 기부가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액과 기부가격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나 그 이상 소득자는 반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이나 상대적으로 중하위소득층이 기부가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도별 기부금액과 기부가격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한 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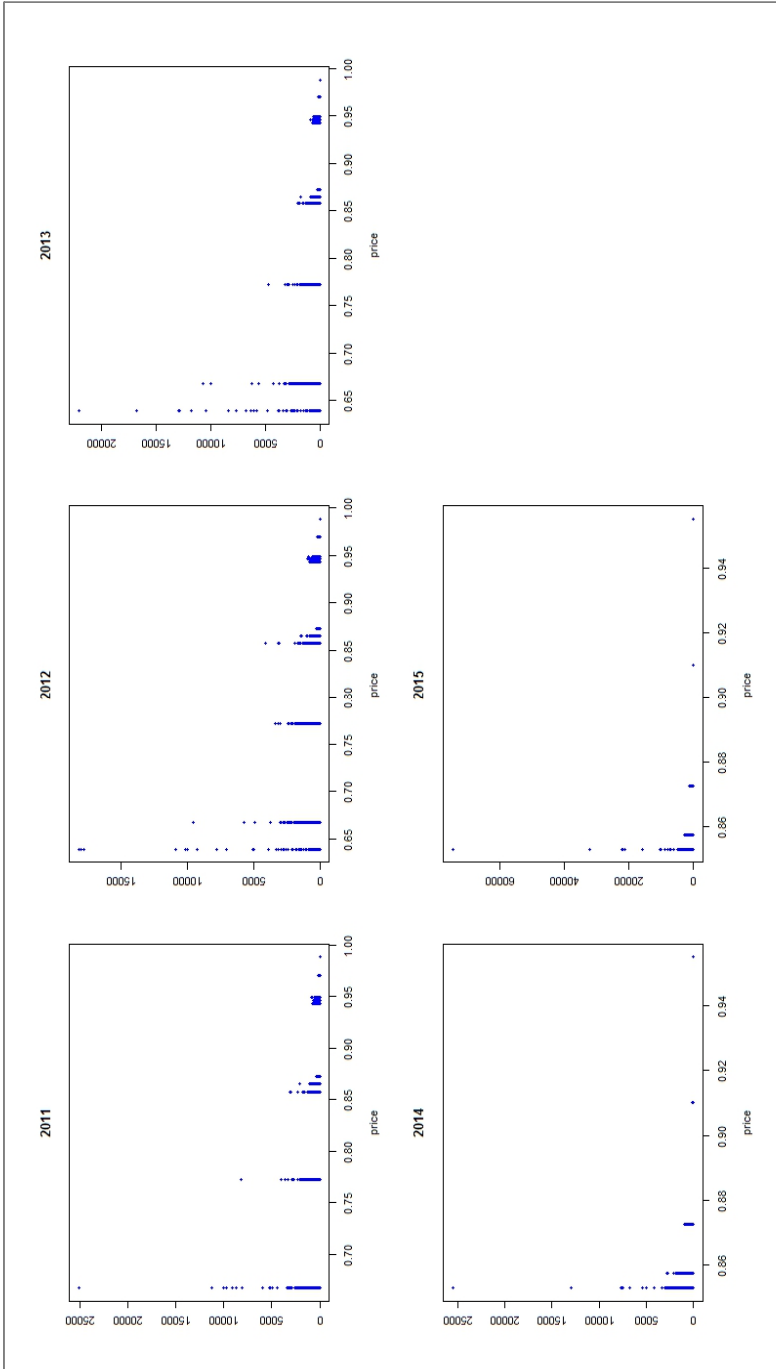
[그림 III-6] 소득구간별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및 기부가격 추이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III-7] 연도별 기부가격 및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분포 추이

(단위: 만원(좌축, y축))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 라. 분석결과

기부금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에서 이용한 변수들은 그 목적에 맞게 조정하였다. 먼저 기부금 공제금액, 세후소득 등 각 소득변수들은 연도별로 적절한 비교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sup>33)</sup>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다. 이는 다른 연도 소득들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기부가격은 각 소득자가 직면하는 근로소득세 한계세율을 차감한  $(1 - \tau_t)$ 로 정의되는데, 소득 공제 시기에는 개인의 법정 한계세율을, 세액공제 전환 후에는 세액공제율을 한계세율로 적용하였다. 기부금 첫 1원 지출의 가격을 측정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계세율을 추정하였다. 또한 과거 소득공제 시절에 기부금의 증가가 야기하는 과표구간 변동과 이를 통한 한계세율 변화라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기부금 지출이 없었다는 가정에서 도출된 근소세액을 차감한 세후소득을 소득변수로 이용하였다.

그 외 기부금 관련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자<sup>34)</sup>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III-25〉 주요 변수 설명

변수명	설명	비고
기부금 공제금액	연도별 항목별 기부금 공제금액의 총합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여 사용
세후소득	총급여에서 기부금 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소득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여 사용
기부가격	1-한계세율 또는 세액공제율로 산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기부금 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을, 2014년 이후는 세액공제율(15%)을 일괄적으로 적용
연령	근로소득자의 연령	
성별	근로소득자의 성별	남성은 0, 여성은 1의 값을 갖도록 설정
부양가족 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수	급여소득으로 본인미공제자는 0,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자는 결측치로 처리됨

3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7. 4. 1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전국)자료 사용, 검색일자: 2016. 4. 13

34) 외국인 숙련기술자 유치 등을 위해 현 종합소득세 또는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표 III-25〉의 계속

변수명	설명	비고
연도별 더미	해당년도에만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실질성장률	국내총생산(GDP) 기준 실질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기부금 공제금액, 세후소득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사용	

자료: 저자 작성

### 1) Heckman Two stage model

기부금 공제를 설명하기 위해 Heckman two stage 모형을 적용하였다. 기부금 공제신청이 절반 정도의 소득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Heckman two stage 모형은 실제 관측되지 않는 자료들의 분포를 추정과정에 포함함으로써 관측된 표본을 이용한 회귀분석의 일치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1단계에서는 기부금 공제 신청 여부를 기준으로 Probit 모형을 적용하여 기부금 공제액 분포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추정한다. 패널자료를 이용함에 따라 Random effect 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기부 여부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기부금 공제신청 확률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기부 여부 더미변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모두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이 0보다 큰 근로소득자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설정한다. 이는 간헐적 기부금 공제신청자들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Clotfelter(1980)의 결과를 따라 지속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납세자와 간헐적으로 받는 사람의 가격탄력성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1단계 추정과 2단계 추정을 식별하기 위한 배제제약 조건으로 세대주 여부를 이용하였다. 기부금 지출 여부는 가족을 대표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소득세 부담을 이해하고 있는 세대주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지출 금액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소득 없는 부양가족 또는 다른 소득자의 기부금 지출을 모아서 공제신청을 하여 세대

주의 기부금 공제 신청금액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부양가족 규모가 필요경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기부금 지출을 줄일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그 방향성을 짐작하기 어렵다. 세대주의 기부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2014년 기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기부금액을 모아서 공제받을 경제적 유인은 사라진 상태다.

〈표 III-26〉 기부 여부에 대한 Random effects probit regression 결과

VARIABLES	기부 여부
ln(세후소득)	4.270*** (0.0306)
ln(기부가격)	0.428** (0.193)
연령	-0.0130*** (0.000858)
성별	0.394*** (0.0188)
부양가족 수	-0.0497*** (0.00499)
세대주 여부	0.0641*** (0.0167)
2012	-0.123*** (0.0205)
2013	-0.259*** (0.0208)
2014	-0.513*** (0.0214)
2015	-0.712*** (0.0215)
Constant	-54.99*** (0.377)
lnsig2u	2.832*** (0.0164)
Observations	499,913
Number of id2	99,989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1단계 추정에 사용한 독립변수는 세후소득, 기부가격, 연령, 부양가족 수, 세대주 여부, 연도더미이다. 세후소득은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소득이며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였다.

추정결과 1단계 추정에서 배제변수로 이용한 세대주 여부 변수는 기부금 공제 신청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주의 기부금 공제 신청확률은 그렇지 않은 소득자에 비해 6.4%p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단계 추정과정은 기부금 공제 신청을 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추정모형을 적용한다. 이때 기부금 공제 신청자들만을 고려하는 표본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 Random effect probit의 fitted value를 사용하여 추정된 분포를 바탕으로 분포확률변수(Inverse Mills ratio, lambda)를 계산하고, 이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추정한다.<sup>35)</sup> 추정결과 표본선택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포함한 분포함수 lambda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부금 공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0.119로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탄력성은 1.19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인 박기백(2010), 송헌재(2013) 결과의 중간 정도 크기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탄력성으로 송헌재(2013)의 -7.5~-9.9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다.<sup>36)</sup> 최근의 세액공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기부금 공제 신청금액의 변화가 반영되었고 추정에 이용된 자료규모의 차이로 판단된다. 다만 소득탄력성은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기부금 공제 신청자료에 따르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시기를 전후하여 소득수준별로 상이한 반응 경로를 보인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소득수준별 기부금의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소득구간의 구분은 최근 정부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5,500만~7천만원, 7천만~1억원, 1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는데 5,500만원 이하 구간은 서민층, 1억원 이하는 중산층, 1억원 초과는 고

35) 전체 자료의 분포와 실제 추정모형에 이용하는 자료의 분포 차이를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36) 박기백(2010)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0.564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소득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추정결과 소득탄력성은 0.89~1.46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 증가가 기부금 공제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기부라는 상품의 한계효용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소득탄력성은 1.46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1.40(5,500만 ~ 7천만원), 1.15(7천만 ~ 1억원), 0.89(1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가격탄력성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낮거나(총급여 7천만 ~ 1억원), 양(+의 값(5,5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을 보여주기도 한다. 총급여 5,500만 ~ 7천만원 소득자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0.40으로 나타나 기부금가격에 유의미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소득세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기부금 공제 신청자들의 기부행태에 소득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가격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부가격의 유의도가 낮아지는 것은 기부의 성격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 공제라는 가격의 영향보다 종교활동에의 신실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표 III-27〉 Fixed-effects(within) regression

	전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1억원 이하		총급여 1억원 초과	
	beta	marginal effect	beta	marginal effect	beta	marginal effect	beta	marginal effect	beta	marginal effect
ln(세후소득)	0.864*** (0.0428)	1.1860	0.995*** (0.198)	1.4553	0.926*** (0.186)	1.4025	1.063*** (0.110)	1.1507	0.893*** (0.0576)	0.8939
ln(기부금액)	-0.151*** (0.0498)	-0.1191	0.362*** (0.139)	0.4085	-0.449** (0.187)	-0.4010	0.0312 (0.134)	0.0400	0.293*** (0.110)	0.2934
연령	0.00565** (0.00235)	0.0047	0.0271*** (0.00896)	0.0257	-0.00425 (0.00832)	-0.0057	-0.0107** (0.00521)	-0.0109	-0.00888 (0.00555)	-0.0089
부양가족 수	0.0351*** (0.00379)	0.0313	0.00158 (0.00885)	-0.0038	0.0166** (0.00749)	0.0111	0.0522*** (0.00685)	0.0512	0.0446*** (0.00871)	0.0445
2012	0.0691*** (0.00556)	0.0598	0.0767*** (0.0110)	0.0635	0.0404*** (0.0111)	0.0267	0.0828*** (0.0102)	0.0803	0.102*** (0.0138)	0.1017
2013	0.112*** (0.00552)	0.0926	0.0881*** (0.0112)	0.0602	0.0751*** (0.0112)	0.0462	0.130*** (0.0105)	0.1246	0.217*** (0.0155)	0.2164
2014	-0.0547*** (0.00550)	-0.0934	-0.0854*** (0.0109)	-0.1406	-0.0689*** (0.0109)	-0.1261	-0.0390*** (0.00996)	-0.0495	-0.0307** (0.0132)	-0.0308
lambda	-0.162*** (0.0167)		-0.136** (0.0566)		-0.186*** (0.0686)		-0.0608 (0.0564)		-0.00424 (0.0668)	
Constant	-3.264*** (0.499)		-5.579** (2.283)		-3.633* (2.155)		-5.306*** (1.281)		-2.957*** (0.688)	
Observations	196,400		46,595		50,185		63,410		36,210	
R-squared	0.028		0.054		0.025		0.019		0.024	
Number of id	39,280		9,319		10,037		12,682		7,242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제형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 2) Random effects tobit regression

기부금 공제 신청을 분석하기 위해 Tobit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중도절단 자료(censored data)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모형인데, 기부금 공제 역시 하한이 0으로 중도 절단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추정모형은 납세자들의 세부담에 대한 기대가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Adaptive Expectation) 가정에 따라 당해 연말정산 경험(전년도 소득과 기부가격)이 올해 기부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즉 당해 연말정산 경험을 통해 기부금과 소득세액 감면의 관계, 즉 기부가격을 이해한다고 가정하였다. 실제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당해연도 총입금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다른 공제제도 역시 많이 존재하여 실제 기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sup>37)</sup> 반면 당해 2월 말에 시행하는 전년도 근로소득연말정산은 기부금 등의 공제효과를 쉽게 느낄 수 있게 하므로 당해연도 연말정산 경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38)</sup>

추정결과 기부금 공제 신청액의 소득탄력성은 2.45로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기부금액 탄력성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격탄력성 역시 -0.63으로 앞서의 추정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탄력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유지된다.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소득탄력성이 낮아지는 현상은 완화되었다. 각 소득구간별로 1.62(5,500만원 이하), 0.28(5,500만~7천만원), 0.97(7천만~1억원), 0.40(1억원 초과)으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나 5,500만~7천만원 구간 소득자의 탄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

37) 물론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자신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부여되므로 유효하지 않은 논거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 변화 직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과거 경험에 따른 의사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38) 추정모형을 현재 및 미래 소득과 가격변수를 포함하도록 확장하였을 경우에는 소득탄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즉 소득 변화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기부금 변화로 나타나는데 그 영향은 탄력성 0.27 수준으로 나타난다(부록 참조). 반면 기부가격은 당해연도 가격 변화에 대한 기부금액 탄력성이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경제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데 만약 기부가격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실제 소득신고 시점까지 체감하지 못한다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다. 가격탄력성의 경우 낮은 소득 계층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높은 소득 계층에서는 유의성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자와 5,500만~7천만원 소득자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2.47, -2.40으로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 소득자들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아주 작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 결과는 기부가격의 영향력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기부금 결정에서 이타적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중하위소득 계층에서는 소득효과보다 가격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기부 활성화를 위해 7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28〉 Random Tobit Regression(전체 sample)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1))	5.160*** (0.0303)	2.454*** (0.0155)	3.303*** (0.0195)
ln(기부가격(-1))	-1.327*** (0.142)	-0.631*** (0.0676)	-0.850*** (0.0909)
연령	-0.0411*** (0.00183)	-0.0196*** (0.000869)	-0.0263*** (0.00117)
성별	0.505*** (0.0413)	0.240*** (0.0196)	0.323*** (0.0264)
부양가족 수	0.160*** (0.00884)	0.0763*** (0.00421)	0.103*** (0.00565)
2013	0.0658*** (0.0165)	0.0327*** (0.00818)	0.0439*** (0.0110)
2014	-1.139*** (0.0172)	-0.536*** (0.00816)	-0.722*** (0.0109)
2015	-0.751*** (0.0177)	-0.360*** (0.00852)	-0.484*** (0.0114)
Constant	-62.19*** (0.387)	-	-
sigma_u	4.858*** (0.0163)	-	-
sigma_e	3.117*** (0.00567)	-	-
Observations	399,924	399,924	399,924
Number of id2	99,985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III-29〉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1))	5.343*** (0.0660)	1.623*** (0.0205)	2.015*** (0.0260)
ln(기부가격(-1))	-8.118*** (0.425)	-2.467*** (0.129)	-3.061*** (0.161)
연령	-0.109*** (0.00330)	-0.0332*** (0.00101)	-0.0412*** (0.00125)
성별	0.953*** (0.0724)	0.290*** (0.0220)	0.359*** (0.0273)
부양가족 수	-0.0753*** (0.0201)	-0.0229*** (0.00610)	-0.0284*** (0.00757)
2013	0.153*** (0.0351)	0.0500*** (0.0115)	0.0645*** (0.0148)
2014	-2.373*** (0.0380)	-0.708*** (0.0115)	-0.870*** (0.0144)
2015	-1.604*** (0.0461)	-0.492*** (0.0141)	-0.615*** (0.0176)
Constant	-64.38*** (0.843)	-	-
sigma_u	6.728*** (0.0364)	-	-
sigma_e	4.404*** (0.0137)	-	-
Observations	228,817	228,817	228,817
Number of id2	57,205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III-30〉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1))	0.397*** (0.0797)	0.281*** (0.0565)	0.356*** (0.0714)
ln(기부가격(-1))	-3.385*** (0.402)	-2.396*** (0.284)	-3.031*** (0.360)
연령	0.0373*** (0.00418)	0.0264*** (0.00296)	0.0334*** (0.00374)
성별	1.435*** (0.0799)	1.016*** (0.0566)	1.285*** (0.0713)
부양가족 수	0.158*** (0.0150)	0.112*** (0.0106)	0.142*** (0.0134)
2013	0.0805*** (0.0283)	0.0577*** (0.0203)	0.0725*** (0.0255)
2014	-0.464*** (0.0297)	-0.325*** (0.0208)	-0.414*** (0.0264)
2015	-0.0614* (0.0322)	-0.0438* (0.0230)	-0.0552* (0.0290)
Constant	-2.182** (1.019)	—	—
sigma_u	3.956*** (0.0271)	—	—
sigma_e	-2.392*** (0.00883)	—	—
Observations	65,092	65,092	65,092
Number of id2	16,273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III-31〉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이하)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1))	1.133*** (0.0790)	0.970*** (0.0678)	1.096*** (0.0764)
ln(기부가격(-1))	-0.392 (0.266)	-0.335 (0.227)	-0.379 (0.257)
연령	0.0265*** (0.00345)	0.0227*** (0.00295)	0.0257*** (0.00334)
성별	0.523*** (0.0771)	0.448*** (0.0660)	0.506*** (0.0746)
부양가족 수	0.146*** (0.0121)	0.125*** (0.0104)	0.141*** (0.0117)
2013	0.118*** (0.0224)	0.102*** (0.0193)	0.114*** (0.0217)
2014	-0.139*** (0.0235)	-0.119*** (0.0201)	-0.134*** (0.0227)
2015	-0.0887*** (0.0265)	-0.0758*** (0.0227)	-0.0857*** (0.0256)
Constant	-9.885*** (1.024)	—	—
sigma_u	3.276*** (0.0210)	—	—
sigma_e	1.979*** (0.00676)	—	—
Observations	68,167	68,167	68,167
Number of id2	17,042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III-32〉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초과)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1))	0.454*** (0.0774)	0.399*** (0.0681)	0.443*** (0.0754)
ln(기부가격(-1))	0.0921 (0.238)	0.0809 (0.209)	0.0897 (0.232)
연령	0.0166*** (0.00523)	0.0146*** (0.00460)	0.0162*** (0.00510)
성별	-0.0672 (0.138)	-0.0590 (0.122)	-0.0654 (0.135)
부양가족 수	0.223*** (0.0165)	0.196*** (0.0145)	0.217*** (0.0161)
2013	0.176*** (0.0295)	0.154*** (0.0260)	0.171*** (0.0288)
2014	-0.00984 (0.0312)	-0.00861 (0.0273)	-0.00958 (0.0304)
2015	0.0887** (0.0452)	0.0779** (0.0397)	0.0864** (0.0440)
Constant	-0.316 (1.032)	-	-
sigma_u	3.339*** (0.0284)	-	-
sigma_e	1.947*** (0.00886)	-	-
Observations	37,844	37,844	37,844
Number of id2	9,463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기부금의 성격에 따른 기부행위 변동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정기부금 변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져 있고, 지정기부금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며 공제한도 등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탄력성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추정결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세정책의 영향 역시 소득구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샘플에

대한 추정결과 소득탄력성은 2.47, 가격탄력성은 -0.65로 전체 기부금에 대한 추정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소득구간별 탄력성에서는 소득탄력성의 경우 유사한 추세를 보이나 가격탄력성의 경우 상당한 격차를 보여준다. 즉, 5,500만원 이하 및 5,500만~7천만원 소득자들의 가격탄력성이 각각 -3.37, -3.75로 전체 기부금 가격탄력성 -2.47, -2.40에 비해 큰 추정치를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정기부금에 대해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준다. 지정기부금 모금단체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정기부금 모금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낮아 가격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3〉 Random Tobit Regression(전체 sample)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1))	6.177*** (0.0411)	2.472*** (0.0173)	3.307*** (0.0223)
ln(기부가격(-1))	-1.623*** (0.193)	-0.649*** (0.0772)	-0.869*** (0.103)
연령	-0.0369*** (0.00236)	-0.0148*** (0.000944)	-0.0198*** (0.00126)
성별	1.283*** (0.0531)	0.513*** (0.0213)	0.687*** (0.0284)
부양가족 수	0.207*** (0.0125)	0.0829*** (0.00499)	0.111*** (0.00666)
2014	-1.203*** (0.0203)	-0.483*** (0.00819)	-0.646*** (0.0110)
2015	-0.703*** (0.0206)	-0.288*** (0.00848)	-0.386*** (0.0113)
Constant	-77.45*** (0.524)	-	-
sigma_u	5.953*** (0.0218)	-	-
sigma_e	3.564*** (0.00855)	-	-
Observations	299,946	299,946	299,946
Number of id2	99,985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III-34〉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1))	6.486*** (0.0937)	1.713*** (0.0250)	1.931*** (0.0292)
ln(기부가격(-1))	-12.75*** (0.615)	-3.366*** (0.162)	-3.795*** (0.183)
연령	-0.108*** (0.00428)	-0.0285*** (0.00113)	-0.0321*** (0.00128)
성별	2.140*** (0.0929)	0.565*** (0.0246)	0.637*** (0.0277)
부양가족 수	-0.139*** (0.0282)	-0.0367*** (0.00746)	-0.0414*** (0.00841)
2014	-2.897*** (0.0459)	-0.775*** (0.0124)	-0.884*** (0.0145)
2015	-2.118*** (0.0566)	-0.581*** (0.0155)	-0.674*** (0.0180)
Constant	-81.63*** (1.198)	—	—
sigma_u	8.009*** (0.0499)	—	—
sigma_e	4.989*** (0.0213)	—	—
Observations	171,613	171,613	171,613
Number of id2	57,205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III-35〉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1))	-0.0819 (0.126)	-0.0464 (0.0714)	-0.0640 (0.0985)
ln(기부가격(-1))	-6.612*** (0.659)	-3.746*** (0.373)	-5.167*** (0.515)
연령	0.0430*** (0.00558)	0.0244*** (0.00316)	0.0336*** (0.00435)
성별	1.711*** (0.107)	0.970*** (0.0606)	1.337*** (0.0832)
부양가족 수	0.154*** (0.0221)	0.0875*** (0.0125)	0.121*** (0.0173)
2014	-0.476*** (0.0352)	-0.267*** (0.0198)	-0.370*** (0.0274)
2015	0.0755** (0.0381)	0.0434** (0.0219)	0.0597** (0.0301)
Constant	2.028 (1.612)	—	—
sigma_u	5.178*** (0.0392)	—	—
sigma_e	2.825*** (0.0137)	—	—
Observations	48,819	48,819	48,819
Number of id2	16,273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III-36〉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이하)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1))	1.203*** (0.128)	0.827*** (0.0885)	1.063*** (0.113)
ln(기부가격(-1))	-0.566 (0.394)	-0.389 (0.271)	-0.500 (0.348)
연령	0.0310*** (0.00478)	0.0213*** (0.00329)	0.0274*** (0.00422)
성별	0.694*** (0.107)	0.477*** (0.0733)	0.613*** (0.0940)
부양가족 수	0.227*** (0.0185)	0.156*** (0.0127)	0.200*** (0.0163)
2014	-0.115*** (0.0282)	-0.0785*** (0.0193)	-0.101*** (0.0249)
2015	0.0784** (0.0333)	0.0541** (0.0230)	0.0694** (0.0295)
Constant	-12.45*** (1.669)	—	—
sigma_u	4.456*** (0.0310)	—	—
sigma_e	2.393*** (0.0106)	—	—
Observations	51,126	51,126	51,126
Number of id2	17,042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III-37〉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초과)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1))	0.514*** (0.121)	0.363*** (0.0855)	0.460*** (0.108)
ln(기부가격(-1))	0.653* (0.364)	0.461* (0.257)	0.584* (0.325)
연령	0.0418*** (0.00729)	0.0295*** (0.00515)	0.0373*** (0.00652)
성별	0.325* (0.190)	0.229* (0.134)	0.291* (0.170)
부양가족 수	0.417*** (0.0257)	0.295*** (0.0182)	0.373*** (0.0229)
2014	0.0993** (0.0388)	0.0697** (0.0272)	0.0886** (0.0346)
2015	0.306*** (0.0644)	0.216*** (0.0456)	0.274*** (0.0577)
Constant	-4.192*** (1.614)	-	-
sigma_u	4.486*** (0.0414)	-	-
sigma_e	2.462*** (0.0146)	-	-
Observations	28,386	28,386	28,386
Number of id2	9,463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 마. 소결

근로소득자들의 납세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기부금 공제 신청액의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것은 2014년부터 시행된 기부금액에 대한 공제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의 소득공제, 즉 기부금의 가격이 자신의 한계세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방식에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 세액공제율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생적 제도 변화는 납세자들의 기부금 변화의 요인분석을 가능케 한다.

기부금 공제 신청 자료가 가지는 특성, 즉 중도절단 자료(censored data)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된 결과 전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에 비해 큰 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은 추정방법에 따라 1.19~2.45 수준을 보였으며 그 크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탄력성은 -0.12 ~ -0.63 으로 국내 선행연구에 비해 상당히 작은 크기를 보여준다. 오히려 미국 등의 외국사례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중하위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2.40 ~ -2.47)를 보여주고 고소득구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다. 종교단체 등이 포함된 지정기부금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중하위소득자들의 가격탄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고 소득수준이 주된 결정요인임을 시사한다. 다만 7천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탄력성을 보여줘 조세지원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자들의 기부가격을 낮추고 고소득자들의 기부가격을 높인 세제개편, 즉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전반적인 기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중하위소득 계층에서 전체 기부금에 비해 지정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총소득 7천만원 이하 계층의 지정기부금 증가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기부액의 하락을 근거로 소득공제로의 환원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등 다양한 요인들의 효과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소득공제로의 환원은 실질적인 기부금 증가없이 세수손실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동일한 조세지원액에도 불구하고 그 배분이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

## IV. 결론 및 정책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우리나라 가구 및 개인들의 기부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세 가지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기부 의향 및 행태에 관한 횡단면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다. 동 횡단면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을 인식하고 있는 자는 10명 중 4명으로 조사되었다. 제도 변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60%의 사람들의 기부행위는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도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자 중 86%는 이런 제도 변화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고, 기부를 줄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9%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94.3%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설문조사 분석의 한계는 인과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상관분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 변화의 인과효과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와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인과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분석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08년 이후 매년 조사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개인이나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때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은 가용 정보의 출처 및 정보 수집 단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보를 이용한 개인 단위의 분석이다. 둘째, 재정패널 설문조사상 정보를 활용한 가구 단위의 분석이다.

재정패널조사에서 확보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보를 이용한 개인 단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계층에 대한 정책 변화의 평균 처치효과는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율의 감소를 야기하는 인과효과가 없음을 시사한다. 반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정책 변화의 평균 처치효과는 일부 모형에서 10% 유의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율의 증가를 야기하는 인과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재정패널조사 자료 자체를 사용하여 가구 단위의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정책 변화의 평균 처치효과는 10% 유의수준 아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구 단위의 분석에서는 고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 계층에서도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율의 감소를 야기하는 인과효과가 없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분석은 국세청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들의 납세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기부금 공제 신청액의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분석이다. 기부금 공제 신청자료가 갖는 특성, 즉 중도절단 자료(censored data)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에 비해 큰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은 추정방법에 따라 1.19~2.45 수준을 보였으며 그 크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탄력성은 -0.12 ~ -0.63으로 크기가 상당히 작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중하위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2.40 ~ -2.47)를 보여주고 고소득 구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다. 종교단체 등이 포함된 지정기부금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중하위 소득자들의 가격탄력성이 더 크게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개인이나 가구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는 인과효과는 대체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횡단면 설문조사나 국세청 신고자료

를 통한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소득수준 등의 경제적 형편과 심리적 동기가 주된 결정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개인들의 기부 의향을 조사한 횡단면 설문조사 중 기부금의 증감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부금이 증가한 사람들 가운데 기부금 증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심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9%이다. 또한 지난 3년간 기부금이 감소한 사람들 가운데 그 요인으로 경제적 형편의 악화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7.5%나 된다.

한편,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개인 단위 분석에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저소득 계층의 기부율을 높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한 분석에서도 7천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조세지원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들의 기부가격을 낮추고 고소득자들의 기부가격을 높인 세제개편, 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기부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하위소득 계층에서 전체 기부금에 비해 지정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정책의 초점을 지정기부금에 맞출 경우, 더 큰 기부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구나 개인들의 기부금 관련 세법 규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부금 공제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 사업소득이 없는 자에게만 세부담의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소득을 획득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에 기부가격에서 차이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제상 혜택의 차별이 조세의 형평성 관점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향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에 소득수준별로 기부가격이 유사해지도록 하여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구나 개인들의 기부금 관련 세법 규정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혼란스럽게 규정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기부금 관련 규정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들을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용된 용어의 정의가 달라 법 해석상 혼동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아래와 같이 드러났기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세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가 다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 34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정의하며 동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소득금액’을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라고 정의하며 동 정의는 “이하 이 항에서 같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해석해 보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계산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산입한도를 정한다고 이해할 소지가 있다.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필요경비 계산 시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여타 기부금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정하고 산입한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 간에 상이한 해석을 낼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서 납세자에게 법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상이한 해석을 낳는 「소득세법」 규정과 동 시행령 규정 간에 혼동을 없애는 용어 정의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상의 통계작성 방식도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2015년도 『국세통계연보』상 종합소득세의 기부금 신고현황 통계표를 보면, 금액 합계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인 기부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된 기부금액과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액으로 되어 있다. 앞의 두 가지는 기부금액인 반면 마지막 하나는 기부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세액공제액으로서 합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부금특별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득세 신고서상 기부금액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기부금 신고현황 통계표상 인원 합계는 중복집계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동일인이 새롭게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신청하고,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며,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특별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부금 신고인원의 단순 합계뿐만 아니라 순계의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국세통계연보』의 통계작성 방식은 기부금 관련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 참고문헌

---

- 강창희·이정민·이석배·김세움,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프로그램 평가방법』, 2013.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2009, 2011, 2013, 2014, 2015.
- 국세공무원교육원, 『소득세법』, 2016.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증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 제2편 세목별 발전방향』, 2015, p.8 〈표 II-1〉
- 박기백, 「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2010, pp. 143~158
- 박명호,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제6권 제4호, 2013, pp. 151~17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1~7차년도 조사자료 사용자 안내서」, 2016. 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부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설문조사 자료), 2015. 11.
- Auten, G., H. Sieg and C. Clotfelter, “Charitable Giving, Income, and Taxes: An analysis of panel dat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No. 1, 2002, pp. 371~382.
- Bakija, J. and B. Heim, “How Does Charitable Giving Respond to Incentives and Income? New Estimates From Panel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 64, No. 2, June 2011, pp. 615~650.
- Choe, Y. S., and J. Jeong, “Charitable Contributions by Low-and Middle-Income Taxpayers: Further Evidence with a New Method,”

- National Tax Journal*, Vol. 46, No. 1, March, 1993, pp. 33-39.
- Clotfelter, Charles,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Giving: Evidence From a Panel of Taxpay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 1980, pp. 319~340.
- Feldstein, M. and Amy Taylor, "The Income Tax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Econometrica*, Vol. 44, No. 6, 1976, pp. 1201~1222.
- Randolph, William, "Dynamic Income, Progressive Taxes, and the Timing of Charitable Contribu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3, No. 4, 1995, pp. 709~738.

### 〈웹사이트〉

-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5693300>, 검색일자 : 2016. 8. 25.
- 『동아일보』, 「세법개정에도 기부금 늘어...정부 "세액 공제율 인상 신중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51110/74699564/1>, 2015. 11. 10, 검색일자: 2016. 7. 8.
- 『매일경제』, 「작년 기부금 5천억 '뚝' - 작년 사상 첫 감소.. 세수는 2천억 늘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84627>, 2015. 6. 18, 검색일자: 2016. 7. 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section=&tabNo=10&query=%EC%86%8C%EB%93%9D%EC%84%B8%EB%B2%95&x=0&y=0#>, 검색일자: 2016. 7. 4.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16. 4. 13.

### 〈통계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8차년도 재정패널조사 데이터  
국세청 내부자료

---

## 부 록

---

### 1.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범위<sup>39)</sup>

#### 가. 법정기부금의 범위

##### 1)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sup>40)</sup>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39) 국세공무원교육원(2016) 『소득세법』을 요약·발췌

40)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sup>41)</sup>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sup>42)</sup>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8.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4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함.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함. 이하 제6호에서 같은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4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함.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 나. 지정기부금의 범위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것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 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

- 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마.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나. 제1항제1호사목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

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②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③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①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것
- ②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 ③ 위탁자와 위 ①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④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

족한 것으로서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 함

- 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②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③ 정관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④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로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⑤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⑥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⑦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2.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 추가 분석

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개인들에 대한 추가 분석

1) 반복적 횡단면 자료로서의 분석 결과

〈부표 1〉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반복적 횡단면 자료 분석

설명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저소득 처치 지시변수	0.0050*** (0.0017)	0.0036 (0.0024)	0.0001 (0.0044)	0.0004 (0.0044)
고소득 처치 지시변수	0.0040 (0.0033)	-0.0005 (0.0045)	-0.0009 (0.0084)	-0.0005 (0.0084)
8차년도 더미변수	-0.0041*** (0.0013)	-0.0015 (0.0018)	0.0001 (0.0034)	-0.0004 (0.0034)
저소득 처치 더미변수	-0.0059*** (0.0012)	-0.0040** (0.0019)	0.0019 (0.0031)	0.0065* (0.0036)
고소득 처치 더미변수	0.0036 (0.0027)	0.0004 (0.0036)	0.0027 (0.0059)	-0.0059 (0.0068)
소득		7.90e-11*** (0.0000)		1.42e-10** (0.0000)
상수항	0.0157*** (0.0010)	0.0097*** (0.0020)	0.0129*** (0.0024)	0.0052 (0.0038)
표본 수	3,518	3,518	3,518	3,518

주: 1. 저(고)소득 처치 지시변수 = 8차년도 더미변수 × 저(고)소득 처치 더미변수  
 2.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3. 소득은 개인 총소득에서 당첨금, 경조사, 각종 연금의 일시금 등과 같은 일시소득을 뺀 소득을 말한다.  
 자료: 재정패널 6차, 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균형 패널 자료로서의 분석 결과<sup>43)</sup>

〈부표 2〉 소득위치가 가변인 균형 패널 자료 분석: 반복적 횡단면 자료 분석

설명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저소득 처치 지시변수( $D_{it}^1$ )	0.0040*** (0.0016)	0.0033* (0.0020)	0.0001 (0.0026)	-0.0001 (0.0026)
고소득 처치 지시변수( $D_{it}^2$ )	-0.0018 (0.0023)	-0.0009 (0.0037)	-0.0009 (0.0049)	-0.0012 (0.0049)
8차년도 더미 ( $T_t$ )	-0.0022** (0.0010)	-0.0010 (0.0015)	0.0001 (0.0019)	0.0004 (0.0020)
소득		0.0000 (0.0000)		0.0000 (0.0000)
상수항	0.0125*** (0.0005)	0.0124*** (0.0022)	0.0141*** (0.0009)	0.0169*** (0.0029)
표본 수	1,372	1,372	1,372	1,372

주: 1.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2. 소득은 개인 총소득에서 당첨금, 경조사, 각종 연금의 일시금 등과 같은 일시소득을 뺀 소득을 말한다.  
자료: 재정패널 6차, 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재정패널조사 가구에 대한 추가 분석

1) 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분야별 기부금 분석

〈부표 3〉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가구의 분야별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근로소득 대비 분야별 기부금 분석

	전체 기부금	정당 기부금	교육기관 기부금	사회복지 기관기부금	문화예술 기부금	종교기관 기부금 <sup>1)</sup>
저소득 처치 지시변수( $D_{it}^1$ )	0.0006 (0.0024)	-0.0001 (0.0001)	0.0000 (0.0000)	0.0013 (0.0010)	-0.0002 (0.0001)	-0.0002 (0.0024)
고소득 처치 지시변수( $D_{it}^2$ )	-0.0021 (0.0038)	-0.0001 (0.0001)	7.94e-05** (0.0000)	0.0015 (0.0016)	-0.0002 (0.0002)	0.0009 (0.0037)
8차년도 더미 ( $T_t$ )	-0.0021 (0.0018)	0.0001** (0.0001)	0.0000 (0.0000)	-0.0013* (0.0007)	0.0002** (0.0001)	-0.0026 (0.0017)

43) 시점 간 소득 위치가 가변적인 경우도 분석대상에 포함

〈부표 3〉의 계속

	전체 기부금	정당 기부금	교육기관 기부금	사회복지 기관기부금	문화예술 기부금	종교기관 기부금 <sup>1)</sup>
총소득	-1.73E-07 (0.0000)	1.28E-08 (0.0000)	3.85E-09 (0.0000)	1.33E-08 (0.0000)	6.79E-09 (0.0000)	-3.03E-08 (0.0000)
순자산	-2.68e07*** (0.0000)	-6.44E-10 (0.0000)	-1.16E-10 (0.0000)	-8.00E-09 (0.0000)	-3.13E-10 (0.0000)	-2.59e07*** (0.0000)
가구원 수	0.0011 (0.0025)	-0.0001 (0.0001)	0.0000 (0.0000)	0.0016 (0.0010)	0.0000 (0.0001)	-0.0042* (0.0024)
상수항	0.0169** (0.0074)	0.0002 (0.0003)	0.0000 (0.0001)	-0.0025 (0.0031)	0.0001 (0.0003)	0.0258*** (0.0072)
표본 수	1,021	1,021	1,021	1,021	1,021	1,021

주: 1. 종속변수는 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기부금 합계액 비율이다.  
 2. 종교기관 기부금은 현금, 보시에 대한 종교기관 기부금이 해당된다.  
 3.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재정패널 6차, 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가구의 총소득 대비 분야별 기부금 분석

〈부표 4〉 기부금 공제제도 전환이 가구의 분야별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총소득 대비 분야별 기부금 분석

	전체 기부금	정당 기부금	교육기관 기부금	사회복지 기관기부금	문화예술 기부금	종교기관 기부금 <sup>1)</sup>
저소득 처치 지수변수( $D_{it}^1$ )	0.0014 (0.0023)	-0.0001 (0.0001)	0.0000 (0.0000)	0.0012 (0.0009)	-0.0002 (0.0001)	0.0011 (0.0021)
고소득 처치 지수변수( $D_{it}^2$ )	-0.0018 (0.0035)	-0.0001 (0.0001)	7.86e-05** (0.0000)	0.0017 (0.0015)	-0.0002 (0.0002)	0.0008 (0.0033)
8차년도 더미 ( $T_t$ )	-0.0019 (0.0016)	0.0001** (0.0001)	0.0000 (0.0000)	-0.0013* (0.0007)	0.0002** (0.0001)	-0.0024 (0.0015)
총소득	-5.20e-07 (4.75e-07)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순자산	-2.38e07*** (6.97e-08)	-6.09E-10 (0.0000)	-1.15E-10 (0.0000)	-5.74E-09 (0.0000)	-3.13E-10 (0.0000)	-1.73e07*** (0.0000)
가구원 수	0.0008 (0.0023)	-0.0001 (0.0001)	0.0000 (0.0000)	0.0016 (0.0010)	0.0000 (0.0001)	-0.0046** (0.0022)
상수항	0.0172** (0.0069)	0.0002 (0.0002)	0.0000 (0.0001)	-0.0022 (0.0029)	0.0001 (0.0003)	0.0258*** (0.0065)
표본 수	1,021	1,021	1,021	1,021	1,021	1,021

주: 1. 종속변수는 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기부금 합계액 비율이다.  
 2. 종교기관 기부금은 현금, 보시에 대한 종교기관 기부금이 해당된다.  
 3.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재정패널 6차, 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3. Tobit 모형 추가 분석

가. 종속변수 : 총기부금액

〈부표 5〉 Random Tobit Regression(전체 sample)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 <sub>t</sub>	7.692*** (0.0420)	3.747*** (0.0212)	4.851*** (0.0262)
ln(세후소득) <sub>t-1</sub>	0.553*** (0.0367)	0.270*** (0.0179)	0.349*** (0.0231)
ln(기부가격) <sub>t</sub>	9.838*** (0.139)	4.792*** (0.0680)	6.205*** (0.0878)
ln(기부가격) <sub>t-1</sub>	-2.083*** (0.144)	-1.014*** (0.0701)	-1.313*** (0.0908)
연령	-0.0354*** (0.00180)	-0.0172*** (0.000875)	-0.0223*** (0.00113)
성별	1.208*** (0.0402)	0.588*** (0.0196)	0.762*** (0.0253)
부양가족 수	-0.131*** (0.00855)	-0.0640*** (0.00416)	-0.0828*** (0.00539)
2013	0.0195 (0.0154)	0.0101 (0.00794)	0.0130 (0.0102)
2014	-1.487*** (0.0163)	-0.718*** (0.00796)	-0.930*** (0.0102)
2015	-1.140*** (0.0169)	-0.559*** (0.00830)	-0.723*** (0.0106)
Constant	-100.3*** (0.429)	—	—
sigma_u	4.694*** (0.0151)	—	—
sigma_e	2.900*** (0.00520)	—	—
Observations	399,924	399,924	399,924
Number of id2	99,985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6〉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 <sub>t</sub>	11.70*** (0.0899)	3.625*** (0.0290)	4.486*** (0.0370)
ln(세후소득) <sub>t-1</sub>	0.812*** (0.0683)	0.252*** (0.0212)	0.311*** (0.0262)
ln(기부가격) <sub>t</sub>	22.49*** (0.432)	6.970*** (0.134)	8.626*** (0.167)
ln(기부가격) <sub>t-1</sub>	-3.205*** (0.409)	-0.993*** (0.127)	-1.229*** (0.157)
연령	-0.0347*** (0.00314)	-0.0108*** (0.000975)	-0.0133*** (0.00121)
성별	1.805*** (0.0688)	0.559*** (0.0214)	0.692*** (0.0264)
부양가족 수	-0.733*** (0.0195)	-0.227*** (0.00607)	-0.281*** (0.00752)
2013	0.0267 (0.0326)	0.00874 (0.0107)	0.0110 (0.0135)
2014	-1.883*** (0.0419)	-0.572*** (0.0128)	-0.702*** (0.0158)
2015	-0.967*** (0.0466)	-0.304*** (0.0146)	-0.379*** (0.0182)
Constant	-153.0*** (1.069)	—	—
sigma_u	6.237*** (0.0322)	—	—
sigma_e	4.050*** (0.0125)	—	—
Observations	228,817	228,817	228,817
Number of id2	57,205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7〉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 <sub>t</sub>	5.537*** (0.120)	3.956*** (0.0871)	4.968*** (0.108)
ln(세후소득) <sub>t-1</sub>	-0.130 (0.0802)	-0.0926 (0.0573)	-0.116 (0.0719)
ln(기부가액) <sub>t</sub>	7.513*** (0.491)	5.368*** (0.351)	6.740*** (0.440)
ln(기부가액) <sub>t-1</sub>	-0.969** (0.399)	-0.692** (0.285)	-0.869** (0.358)
연령	0.0229*** (0.00411)	0.0164*** (0.00294)	0.0205*** (0.00369)
성별	1.419*** (0.0784)	1.014*** (0.0560)	1.273*** (0.0701)
부양가족 수	0.0146 (0.0151)	0.0104 (0.0108)	0.0131 (0.0135)
2013	-0.0243 (0.0278)	-0.0179 (0.0205)	-0.0221 (0.0253)
2014	-0.842*** (0.0306)	-0.600*** (0.0219)	-0.754*** (0.0273)
2015	-0.694*** (0.0346)	-0.498*** (0.0248)	-0.624*** (0.0310)
Constant	-65.07*** (1,675)	-	-
sigma_u	3.884*** (0.0266)	-	-
sigma_e	2,338*** (0,00863)	-	-
Observations	65,092	65,092	65,092
Number of id2	16,273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8〉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이하)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 <sub>t</sub>	3.393*** (0.0984)	2.917*** (0.0849)	3.283*** (0.0951)
ln(세후소득) <sub>t-1</sub>	0.527*** (0.0800)	0.453*** (0.0688)	0.509*** (0.0774)
ln(기부가격) <sub>t</sub>	2.624*** (0.287)	2.256*** (0.247)	2.539*** (0.278)
ln(기부가격) <sub>t-1</sub>	0.915*** (0.267)	0.787*** (0.229)	0.885*** (0.258)
연령	0.0178*** (0.00342)	0.0153*** (0.00294)	0.0173*** (0.00331)
성별	0.554*** (0.0762)	0.476*** (0.0655)	0.536*** (0.0737)
부양가족 수	0.0699*** (0.0123)	0.0601*** (0.0105)	0.0676*** (0.0119)
2013	0.0619*** (0.0223)	0.0540*** (0.0194)	0.0601*** (0.0216)
2014	-0.435*** (0.0260)	-0.374*** (0.0224)	-0.421*** (0.0252)
2015	-0.537*** (0.0303)	-0.460*** (0.0259)	-0.518*** (0.0292)
Constant	-45.68*** (1.457)	—	—
sigma_u	3.235*** (0.0207)	—	—
sigma_e	1.961*** (0.00670)	—	—
Observations	68,167	68,167	68,167
Number of id2	17,042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9〉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초과)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 <sub>t</sub>	1.420*** (0.0873)	1.246*** (0.0765)	1.383*** (0.0849)
ln(세후소득) <sub>t-1</sub>	-0.0930 (0.0840)	-0.0816 (0.0737)	-0.0906 (0.0818)
ln(기부가격) <sub>t</sub>	0.210 (0.249)	0.184 (0.219)	0.204 (0.243)
ln(기부가격) <sub>t-1</sub>	0.456* (0.245)	0.400* (0.215)	0.444* (0.239)
연령	0.00913* (0.00526)	0.00801* (0.00462)	0.00889* (0.00512)
성별	-0.0714 (0.139)	-0.0627 (0.122)	-0.0696 (0.135)
부양가족 수	0.201*** (0.0165)	0.177*** (0.0145)	0.196*** (0.0161)
2013	0.145*** (0.0295)	0.128*** (0.0260)	0.141*** (0.0288)
2014	-0.113** (0.0467)	-0.0988** (0.0409)	-0.110** (0.0454)
2015	-0.103* (0.0536)	-0.0903* (0.0469)	-0.100* (0.0521)
Constant	-11.71*** (1,239)	—	—
sigma_u	3.349*** (0.0285)	—	—
sigma_e	1.934*** (0.00880)	—	—
Observations	37,844	37,844	37,844
Number of id2	9,463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나. 종속변수: 지정기부금액

〈부표 10〉 Random Tobit Regression(전체 sample)

	종속변수: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 <sub>t</sub>	8.773*** (0.0606)	3.563*** (0.0252)	4.647*** (0.0321)
ln(세후소득) <sub>t-1</sub>	0.462*** (0.0540)	0.188*** (0.0220)	0.245*** (0.0286)
ln(기부가격) <sub>t</sub>	12.90*** (0.208)	5.241*** (0.0845)	6.835*** (0.110)
ln(기부가격) <sub>t-1</sub>	-2.878*** (0.194)	-1.169*** (0.0789)	-1.524*** (0.103)
연령	-0.0352*** (0.00238)	-0.0143*** (0.000965)	-0.0186*** (0.00126)
성별	1.937*** (0.0530)	0.787*** (0.0216)	1.026*** (0.0280)
부양가족 수	-0.105*** (0.0122)	-0.0427*** (0.00495)	-0.0557*** (0.00645)
2014	-1.570*** (0.0193)	-0.642*** (0.00793)	-0.837*** (0.0103)
2015	-1.075*** (0.0196)	-0.448*** (0.00820)	-0.586*** (0.0106)
Constant	-114.6*** (0.592)	—	—
sigma_u	5.900*** (0.0212)	—	—
sigma_e	3.282*** (0.00778)	—	—
Observations	299,946	299,946	299,946
Number of id2	99,985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11〉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속변수 :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 <sub>t</sub>	13.65*** (0.130)	3.630*** (0.0351)	4.139*** (0.0425)
ln(세후소득) <sub>t-1</sub>	0.736*** (0.101)	0.196*** (0.0268)	0.223*** (0.0305)
ln(기부가격) <sub>t</sub>	28.87*** (0.676)	7.676*** (0.180)	8.753*** (0.207)
ln(기부가격) <sub>t-1</sub>	-6.246*** (0.592)	-1.661*** (0.158)	-1.894*** (0.180)
연령	-0.0285*** (0.00416)	-0.00757*** (0.00111)	-0.00863*** (0.00126)
성별	3.035*** (0.0906)	0.807*** (0.0241)	0.920*** (0.0276)
부양가족 수	-0.870*** (0.0275)	-0.231*** (0.00734)	-0.264*** (0.00842)
2014	-2.041*** (0.0529)	-0.541*** (0.0141)	-0.616*** (0.0163)
2015	-1.018*** (0.0582)	-0.279*** (0.0160)	-0.325*** (0.0186)
Constant	-178.9*** (1.534)	-	-
sigma_u	7.613*** (0.0457)	-	-
sigma_e	4.502*** (0.0190)	-	-
Observations	171,613	171,613	171,613
Number of id2	57,205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12〉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속변수 :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 <sub>t</sub>	7.235*** (0.196)	4.138*** (0.114)	5.672*** (0.154)
ln(세후소득) <sub>t-1</sub>	-0.278** (0.127)	-0.159** (0.0729)	-0.218** (0.0999)
ln(기부가격) <sub>t</sub>	12.91*** (0.894)	7.386*** (0.512)	10.12*** (0.701)
ln(기부가격) <sub>t-1</sub>	-2.276*** (0.661)	-1.301*** (0.378)	-1.784*** (0.518)
연령	0.0253*** (0.00549)	0.0144*** (0.00314)	0.0198*** (0.00430)
성별	1.688*** (0.105)	0.965*** (0.0600)	1.324*** (0.0819)
부양가족 수	-0.0174 (0.0222)	-0.00995 (0.0127)	-0.0136 (0.0174)
2014	-0.836*** (0.0365)	-0.481*** (0.0212)	-0.658*** (0.0288)
2015	-0.638*** (0.0423)	-0.370*** (0.0246)	-0.505*** (0.0335)
Constant	-86.13*** (2.817)	-	-
sigma_u	5.078*** (0.0383)	-	-
sigma_e	2.768*** (0.0134)	-	-
Observations	48,819	48,819	48,819
Number of id2	16,273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13〉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이하)

	종속변수 :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 <sub>t</sub>	4.425*** (0.161)	3.060*** (0.112)	3.913*** (0.143)
ln(세후소득) <sub>t-1</sub>	0.794*** (0.128)	0.549*** (0.0884)	0.702*** (0.113)
ln(기부가격) <sub>t</sub>	5.116*** (0.460)	3.538*** (0.319)	4.524*** (0.407)
ln(기부가격) <sub>t-1</sub>	1.459*** (0.401)	1.009*** (0.277)	1.291*** (0.354)
연령	0.0205*** (0.00474)	0.0141*** (0.00328)	0.0181*** (0.00419)
성별	0.735*** (0.105)	0.508*** (0.0728)	0.650*** (0.0931)
부양가족 수	0.129*** (0.0187)	0.0889*** (0.0129)	0.114*** (0.0165)
2014	-0.496*** (0.0337)	-0.345*** (0.0236)	-0.440*** (0.0299)
2015	-0.529*** (0.0410)	-0.368*** (0.0286)	-0.469*** (0.0363)
Constant	-63.94*** (2.478)	-	-
sigma_u	4.401*** (0.0306)	-	-
sigma_e	2.375*** (0.0105)	-	-
Observations	51,126	51,126	51,126
Number of id2	17,042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14〉 Random Tobit Regression(총급여 1억원 초과)

	종속변수 : ln(총기부금액)		
	beta	marginal effects (conditional)	marginal effects (unconditional)
ln(세후소득) <sub>t</sub>	1.112*** (0.143)	0.785*** (0.101)	0.995*** (0.127)
ln(세후소득) <sub>t-1</sub>	0.0355 (0.135)	0.0250 (0.0955)	0.0317 (0.121)
ln(기부가격) <sub>t</sub>	1.600*** (0.425)	1.129*** (0.300)	1.430*** (0.380)
ln(기부가격) <sub>t-1</sub>	0.585 (0.375)	0.413 (0.265)	0.523 (0.336)
연령	0.0379*** (0.00732)	0.0267*** (0.00517)	0.0339*** (0.00654)
성별	0.319* (0.190)	0.225* (0.134)	0.285* (0.170)
부양가족 수	0.407*** (0.0257)	0.287*** (0.0182)	0.363*** (0.0229)
2014	-0.160** (0.0722)	-0.112** (0.0508)	-0.143** (0.0645)
2015	0.0280 (0.0821)	0.0198 (0.0582)	0.0251 (0.0736)
Constant	-12.25*** (1.936)	—	—
sigma_u	4.491*** (0.0415)	—	—
sigma_e	2.455*** (0.0146)	—	—
Observations	28,386	28,386	28,386
Number of id2	9,463	—	—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

박명호 · 전병목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14년 당시의 세액공제율은 3천만원 이하의 적격 기부금에 대하여 15%였다. 이런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변화가 개인 또는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자료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기부금 관련 공제방식의 전환이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하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집하는 재정패널자료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신고자료에서 추출된 표본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분석이다.

먼저, 재정패널자료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분석에서는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외생적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으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계층과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와 고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중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을 통제집단으로 식별하였다.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세제상 혜택이 줄어든 고소득 계층의 기부율(기부금/소득)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는 개인 단위 분석 및 가구 단위 분석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0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다. 반면 세제상 혜택이 늘어난 저소득 계층의 기부율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는 개

인 단위 분석에서 10% 유의수준에서 양(+)<sup>1)</sup>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전환이 고소득 계층의 기부행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저소득 계층의 기부행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음, 근로소득자들의 2011~2015 납세자료를 바탕으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해 분석에서는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0.1 ~ -0.6으로 추정되었다. 이 추정 결과는 외국사례와 비슷한 수준이며 기존 우리나라 선행연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소득수준별로는 중하위소득자들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탄력성은 1.2~2.5로 크게 나타나 기부금액 결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기부금 관련 공제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기부행위의 큰 변화 없이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 The Impact of Changes in Tax Incentives on Individuals' Charitable Contributions in Korea

---

Myung-Ho Park · Byung Mok Jeon

The special deduction items in income tax law in Korea was converted from income deduction into tax credit since 2014. Especially, the rate of tax credit is 15% for the charitable contribution of below 30 million won. As a result, tax benefits are reduced for high income earners, but increased for low income earners. This study evaluates the impact of this change in tax incentives on charitable contributions in Korea using two different data sets: one is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panel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the other is the 5-year panel data extracted from the labor income tax filing data of the National Tax Service.

Firstly, we estimate the causal effects of changes in tax incentives on individuals' or households' charitable contributions by applying a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o NaSTaB panel data. In the case of the high income class, while all the average treatment effects are estimated to be negative, non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ase of the low income class, while almost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are estimated to be positive, the ones in individual unit analyses ar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ly, we estimate the price elasticity of charitable giving using income tax filing data. According our regression results, the price elasticity was estimated to lie between  $-0.6$  and  $-0.1$ . This is similar level with U.S cases but lower than Song(2013) for Korea. Our estimates decrease with income. Income elasticity is around  $1.2\sim 2.5$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haritable contributions.

In sum, these results imply that 2014 tax reform to tax credit from income deduction contributes improving equity of tax incentives with relatively small change of charitable contributions.

## ■ 저자약력

### 박명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 전병목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미국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보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이현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16-09

##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

발	행	2016년 12월 30일
저	자	박명호 · 전병목
발	행	인 박형수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	화	(044)414-2114(대)
홈	페이지	www.kj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	가	7,000원
조	판 및 인쇄	일지사
I	S B N	978-89-8191-846-0 93320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